

과학기술기본법(안) 입법의견분석

- 과학기술기본법(안) 공청회에 대비하여 -

1999. 8.

연구책임자

오 준 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명 연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박 수 훈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 상근위원)

손 희 두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송 영 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송 종 국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동 선 (연세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이 종 영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최 영 훈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 상근위원)

최 철 영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目 次

1 장 과학기술기본법(안) 개관	9
1. 과학기술기본법(안)의 구성을 위한 논의	9
2. 과학기술기본법 조문의 편성	11
3. 과학기술기본법(안)	13
2 장 총칙의 분석	27
1. 과학기술기본법의 총칙 개관	27
가. 총칙의 의의	27
나. 과학기술기본법 총칙의 구성요소	28
2. 제1조 목적	29
가. “목적” 조항의 의의	29
나. 과학기술기본법이 규정하는 주요한 수단	29
다. 제1차 목표	30
라. 제2차적 목표	31
마. 대 안	31
바. 대안의 분석	31
3. 용어의 정의	32
가. 용어의 정의 조항의 의의	32
나. 과학기술관계법령의 용어의 정의	32
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용어의 정의	35
4. 제2조 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이념	36
가. 기본이념조항의 의의	36
나. 다른 법률에 설정된 기본이념규정의 예	36

다. 과학기술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이념	39
라. 과학기술기본법의 이념규정에 대한 논의	39
마. 과학기술기본법의 이념규정의 분석	40
5.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1
가. 적용범위 조항의 의의	41
나. 과학기술기본법의 적용범위	42
다. 적용범위조항의 분석	43
6. 제4조 과학기술관련 주체의 책무	44
가. 관련주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의 의의	44
나. 과학기술에 관한 관련주체의 책무	45
다. 과학기술에 관한 관련주체의 책무규정의 분석	47
제 3 장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분석	49
1. 계획규정의 의의	49
2. 과학기술에 관한 계획규정	50
3. 제5조 과학기술예측	50
가. 과학기술예측규정의 의의 및 내용	50
나. 과학기술예측조항의 분석	52
4. 제6조 과학기술기본계획	53
가. 과학기술기본계획규정의 의의와 내용	53
나. 과학기술기본계획규정의 분석	56
5.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58
가. 연도별시행계획규정의 의의 및 내용	58
나. 연도별시행계획규정의 분석	59
6.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59
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규정의 의의 및 내용	59
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규정의 분석	61

제 4 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분석	63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정의 의의 및 필요성	63
가. 위원회의 의의와 종류	63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의	64
2. 제9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64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규정의 의의 및 내용	64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규정의 분석	65
3.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6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의 의의 및 내용	66
(1) 제1안	67
(2) 제2안	68
(3) 제3안	68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의 분석	69
4. 제11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통보 등	71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통보 등의 규정의 의의 및 내용	71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통보 등의 규정의 분석	71
5. 제12조 지방과학기술협의회	72
가. 지방과학기술협의회 규정의 의의 및 내용	72
나. 지방과학기술협의회 규정의 분석	73
6. 제13조 과학기술전담요원등의 지정	73
가. 과학기술전담요원등의 지정규정의 의의 및 내용	73
나. 과학기술전담요원 등의 지정규정의 분석	74
제 5 장 과학기술기반의 확립	77
1. 제4장 이하의 구성요소에 고려될 내용	77
2. 제14조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등	78

가. 과학기술인력의 확보등에 관한 규정의 의의 및 내용	78
나. 과학기술인력의 확보등에 관한 규정의 분석	79
3. 제15조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	80
가.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규정의 의의 및 내용	80
나.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규정의 분석	81
4. 제16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82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규정의 의의 및 내용	82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규정의 분석	84
5. 제17조 국가표준기술의 확립 등	85
가. 국가표준기술의 확립 규정의 의의 및 내용	85
나. 국가표준기술의 확립 규정의 분석	85
6. 제18조 과학기술의 세계화 촉진	86
가. 과학기술의 세계화 촉진규정의 의의 및 내용	86
나. 과학기술의 세계화 촉진규정의 분석	88
7. 제19조 과학기술정보의 유통	88
가. 과학기술정보의 유통규정의 의의 및 내용	88
나. 과학기술정보의 유통규정의 분석	89
제 6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91
1.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	91
2.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지원	92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의 의의	92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의 분석	94
3.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의 평가	96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의 평가규정의 의의	96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의 평가규정의 분석	97
4. 제22조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98
가. 기초과학연구진흥규정의 의의 및 내용	98
나. 기초과학연구진흥규정의 분석	99

5. 제23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99
가. 협동연구개발의 촉진규정의 의의 및 내용	99
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규정의 분석	101
제 7 장 과학기술개발지원 및 성과의 확산	103
1. 제6장 “과학기술개발지원 및 성과의 확산”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	103
2. 제24조 연구개발재원의 확보	104
가. 연구개발재원의 확보규정의 의의 및 내용	104
나. 연구개발재원의 확보규정의 분석	106
3. 제25조 과학기술진흥기금	107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규정의 의의 및 내용	107
나. 과학기술진흥기금 규정의 분석	109
4. 제26조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109
가.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규정의 의의 및 내용	109
나.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규정의 분석	110
5. 제27조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의 지원	111
가.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지원 규정의 의의 및 내용	111
나.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지원 규정의 분석	112
6. 제28조 연구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113
가.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의 의의 및 내용	113
나.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의 분석	113
7. 제29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114
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규정의 의의 및 내용	114
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규정의 분석	114
8. 제30조 세제상의 우대	115
가. 세제상의 우대 규정의 의의 및 내용	115
나. 세제상의 우대 규정의 분석	117

제 8 장 과학문화의 창달 등	119
1. 제7장 “과학문화의 창달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	119
2. 제31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119
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규정의 의의 및 내용	119
나.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규정의 분석	120
제 9 장 과학기술자의 우대 등	123
1. 제8장 “과학기술자의 우대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	123
2. 제32조 과학기술자의 우대	123
가. 과학기술자의 우대 규정의 의의 및 내용	123
나. 과학기술자의 우대 규정의 분석	124
제10장 보칙 및 부칙	127
1. 보칙 및 부칙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	127
2. 부 칙	127
가. 부칙의 의의 및 내용	127
나. 부칙의 분석	128
제11장 맺음말	129

제 1 장 과학기술기본법(안) 개관

1. 과학기술기본법(안)의 구성을 위한 논의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기획단은 1999. 2. 19. 새정치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원장, 자유민주연합의 차수명 정책위원장, 과학기술자문회의 김훈철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국민회의 김영환의원, 자유민주연합 조영재의원, 과학기술부 송옥환 차관을 공동 부위원장으로 하고, 서울산업기술대 지태홍 교수, 한남대 이정희 교수, 생산기술연구원 윤창현 부원장, 한국정보문화센터 김봉기 소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장순식 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임기욱 전문위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유창수 연구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원 송종국 연구원, 서울대학교 주승기 교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광임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오준근 연구원 등을 위원으로 하며, 국민회의 박병석 의원을 실무위원회 반장으로, 과학기술부 최석식 국장을 실무위원회 부반장으로, 국민회의 최수만 과학기술전문위원, 자유민주연합 김인환 과학기술전문위원을 공동간사로 하며, 박수훈 박사와 최영훈 박사를 상근위원으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사무관 각 1인을 실무작업반원으로 하여 출범한 모임이다.

이 모임은 1999. 2. 19.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회의일정과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기본방침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성격, 관련 법률의 범위 설정, 입법수요조사 등을 설정하였다.

전체회의를 기초로 실무작업반이 구성되었다. 실무작업반은 상근위원인 박수훈, 최영훈 박사, 국민회의 최수만, 자유민주연합 김인환 전문위원, 부처에서 파견된 사무관 4인과 오준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작업반 회의는 1999. 2. 24(제2차), 3. 4(제3차), 3. 11(제4차), 3. 18(제5차), 3. 25(제6차), 4. 1.(제7차) 개최되어 과학기술기본법의 본질적 성격 등에 관한 쟁점사항을 논의하였다.

4. 8.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그 동안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정리된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실무작업반 회의는 4. 15.(제8차) 개최되어 한국법제연구원과 과학기술부의 용역사업 계약을 계기로 과학기술기본법의 세부조문의 작성 및 축조심의를

제 1 장 과학기술기본법(안) 개관

위한 심포지움의 개최를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4. 21.~4. 23.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움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팀 전원과 실무작업반원이 모여서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기초로 하여 정리된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였다.

축조심의 회의록에 따라 4. 30.(제9차) 실무작업반이 모여서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1차 초안을 성안하였다.

이 안건은 5. 13. 제3차 전체회의에 회부되었고, 이 안건 채택의 원인이 된 각종 쟁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체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시한을 3개월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법 제정안의 마련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관련법령의 종합적 정비방안을 함께 고려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과학기술관련법령의 정비를 위하여 5. 18.(제10차) 실무작업반의 업무분담 계획이 마련되었다. 법령의 분석 비교도표의 작성, 입법의견의 수집·정리, 법령 상호간의 연관관계 분석 등의 업무의 분장이 있었다.

업무분담의 결과의 점검과 법안의 지속적 심의를 위하여 6. 15.(제11차), 6. 17.(제12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다.

1999. 7. 9. 제4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전체회의에는 그 동안 준비되어 온 과학기술기본법안의 내용 중 국가과학기술회의 및 과학기술평가원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건이 제출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팀으로부터 이 안건은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기획단의 전체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라 기획단의 일부 참여자의 개인적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 안건에 관하여 각 부처의 의견을 조회하도록 의결되었다.

1999. 7. 16. 제5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시기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운용,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결과 등을 기다려서 신중한 입법을 하여야 하자는 의견이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팀으로부터 전체회의안의 개별적 내용에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다. 연구팀의 의견제시에 따라 1999. 7. 23. 실무작업반(제13차)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 법안을 축조심의하여 중간보고서까지의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기획단의 법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하였다.

1. 실무작업반의 초안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폐지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과학기술기본법안을 마련한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는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5년을 한시로 한 특별조치가 많아서 이를 조기에 폐지하는 것이 법률의 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익에도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쟁점이 있는 사항은 복수의 안을 회의안건으로 구성한다.
제1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수반하는 안 - 상근 간사위원 및 별도의 정 부기구로서의 사무처의 설치
제2안 : 현행 특별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
제3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안 - 비상근 민간 간 사위원의 임명, 총리실 안에 보조기구로서의 사무처의 설치(행정 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준하는 안)
3. 과학기술진흥법과 1998년의 국민회의안에 있었던 내용 중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중 5년 한시가 아닌 장기적인 설치가 필요한 사항을 법안의 내용으로 한다.

2. 과학기술기본법 조문의 편성

과학기술기본법(안)의 조문은 아래와 같이 편성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 적)
- 제 2 조 (기본이념)
-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 4 조 (국가 등의 책무)

제 2 장 과학기술기본계획

- 제 5 조 (과학기술예측)
- 제 6 조 (과학기술기본계획)
- 제 7 조 (연도별시행계획)
- 제 8 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 1 장 과학기술기본법(안) 개관

제 3 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9 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단 제1안, 제2안 및 제3안으로 구성)

제11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통보 등)

제12조 (지방과학기술협의회)

제13조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

제 4 장 과학기술기반의 확립

제14조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등)

제15조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

제16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제17조 (국가표준기술의 확립 등)

제18조 (과학기술의 세계화 촉진)

제19조 (과학기술정보의 유통)

제 5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지원)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의 평가)

제22조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

제23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 6 장 과학기술개발 지원 및 성과의 확산

제24조 (연구개발 재원의 확보)

제25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제26조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제27조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의 지원)

제28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제30조 (세계상의 우대)

제 7 장 과학문화의 창달 등

제31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제 8 장 과학기술자의 우대 등

제32조 (과학기술자의 우대)

부 칙

3. 과학기술기본법(안)

제 1 장 총 칙¹⁾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 및 그 종합적 조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이념) ①과학기술인력을 포함한 국가 과학기술자원의 전략적 가치는 존중되며, 그 고도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②모든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인의 자주성과 창의성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③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활용은 환경적 및 윤리적 가치관과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과학기술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과학기술 연구인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문화의 창달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 또는 기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1999. 7. 23. 실무작성반 회의안임

제 1 장 과학기술기본법(안) 개관

④국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학·연구기관·기업·개인 등 (이하 “과학기술관련주체”라 한다)가 과학기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그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합조정체제의 구축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학기술기본계획

제 5 조 (과학기술예측)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본시책 및 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정기적으로 예측하여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예측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이 갖는 기술적 가치는 물론 초래할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 여러 부문에 대한 편익증진효과 및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분석·평가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술의 실용적 가치와는 별도로 미래를 대비할 기반기술을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에 관한 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기타 공·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기타 공·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과학기술기본계획)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목표 달성에 필요한 국가과학기술목표 및 과학기술전략목표
2. 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3. 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및 양성
4. 국가과학기술 기반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
5.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조달·지출계획
6. 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용
7.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 및 기초과학의 진흥
8.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촉진

- 9.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10. 개발된 기술 실용화 및 기술이전 촉진
- 11. 국제과학기술협력
- 12.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 촉진
- 13. 연구시설의 개선 및 확보 등 연구개발환경의 첨단화
- 1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계획

②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한다. 단 계획기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부처별 또는 자치단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관계중앙부처별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본계획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임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기타 공·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연도별시행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당해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2년 이상에 걸치는 장기계획의 추진실적의 제출은 사업의 종료시에 한한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기초하여 기본계획의 실행에 관한 당해연도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 장 과학기술기본법(안) 개관

②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구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 3 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9 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계획·사업의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과학기술관련주체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과학기술 목표 수립 및 전략목표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연도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국책사업의 과학적 타당성 및 국가전략 목표와의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7. 매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등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설립한 과학기술관련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자 우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0.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0조 제1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예산처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환경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관련부처의 장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11인 이내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과학기술관련 3개 연구회의 이사장 각 1인

3.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근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제2항제3호에 정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간사위원이 이를 통할한다.

⑤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⑥위원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및 조사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⑦기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제2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大統領이 되고, 委員은 다음各號의 者가 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이에 준하는 機關의 長

2. 科學技術에 관한 專門知識 및 經驗이 풍부한 者중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

③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幹事委員 1人을 두되, 幹事委員은 科學技術部長官이 된다.

④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事務는 幹事委員이 처리한다.

⑤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上程할 案件을 사전에 檢討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科學 技術委員會가 위임한 案件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家

제 1 장 과학기술기본법(안) 개관

科學技術委員會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⑥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 제3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1인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무총리가 아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⑦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및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⑨제8항에 사무기구는 총리실에 두며 간사위원이 통할한다.

⑩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⑪위원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및 조사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⑫기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및 관련 광역자치단체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과학기술시책 및 과학기술관련 예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방과학기술협의회) ①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지방과학기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소관 과학기술정책에 관련된 업무총괄 및 대외협의를 담당할 과학기술전담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과학기술기반의 확립

제14조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등)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자원의 개발 및 그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강화, 기술훈련의 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자의 연구에 대한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창의적 연구성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장 과학기술기본법(안) 개관

제15조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 ①정부는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 기자재 등을 정비하고 이를 첨단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재료 등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과학기술인력의 연구능력 배양, 과학기술의 진흥, 국제교류의 증진 등을 통한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재단을 설립하고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과학기술재단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제16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①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②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성에 맞는 임무와 목표를 부여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조성·유지하여야 한다.

③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주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제17조 (국가표준기술의 확립 등)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가표준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표준기술의 개발과 그 통일적 준용 및 전문연구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국가표준기술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학기술의 세계화 촉진) 정부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등 연구개발관련기관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 인력, 연구기관의 교류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과학기술정보의 유통) ①정부는 과학기술정보의 생산, 관리·유통 및 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연구개발주체 상호간의 정보교류, 정보망의 구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의 생산, 관리·유통 체계의 확립
 2. 과학기술정보기관의 육성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된 내용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설립·지원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각호의 시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지원) ①정부는 과학기술혁신 및 국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이의 추진을 담당할 연구회 등 연구공동체(이하 “연구회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다.
- ③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④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국가목표 및 정부 각 부처목표에 부합되는 선정 및 평가기준을 심의하여 규정하고 이를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⑥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하는 각 부처가 제4항에 규정된 선정 및 평가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원칙을 심의하여 시달함으로써 각 부처가 이를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의 평가)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위원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 장 과학기술기본법(안) 개관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위원은 제1항의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연구개발수행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규정한 내용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중립적인 기구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다.

제22조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 ①정부는 국가의 기초과학수준의 향상 및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기초과학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제23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①정부는 산·학·연의 교류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의 교류, 연구개발사업의 공동수행,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민·군의 협동연구를 장려하며, 특히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및 민군겸용기술개발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제 6 장 과학기술개발 지원 및 성과의 확산

제24조 (연구개발 재원의 확보)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있어서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과학기술진흥기금) ①정부는 과학기술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과학기술복권발행의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의 상호유기적 연계 및 집적에 따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소재의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의 지원) ①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책사업을 통하여 개발되었거나 국가가 소요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하여 획득된 기술 및 성과를 확산 및 실용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규정된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를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책사업을 통하여 개발되었거나 국가가 소요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하여 획득된 기술 및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함에 있어 참여기관 및 참여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산업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 개발성과를 산업화하는 기업의 부설연구기관에 대하여 병역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제 1 장 과학기술기본법(안) 개관

제28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문·평가, 연구개발장비대여, 기술정보가공·판매 등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업·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의 관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구매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필요기술에 대한 수요조사, 기술의 이전 또는 이양, 상호기술정보교류를 위한 연구회의 구성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에의 위탁연수 알선 등 기술개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00조0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할 수 있으며, 그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국내외 중소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기술지도·자문 등의 지원사업을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세제상의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의 감면등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7 장 과학문화의 창달 등

제31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①정부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및 정보화의 진전에 대비하여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있어서 과학기술문화를 진흥·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개발 및 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 또는 단체,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및 민간 과학박물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8 장 과학기술자의 우대 등

제32조 (과학기술자의 우대) ①정부는 과학기술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연구 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상 및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교수 등이 연구개발한 우수한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시책을 마련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장려하고, 공정한 댓가가 개발자의 권익에 귀속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법률의 폐지) 이 법의 시행과 함께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은 이 법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한국과학재단법’ 및 이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이 법 제1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한국과학기술재단법’ 및 ‘한국과학기술재단’으로 한다.

②제30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및 이에 따라 운영되는 ‘대덕연구단지’는 각각 ‘대덕과학산업단지관리법’ 및 ‘대덕과학산업단지’로 한다.

제 2 장 총칙의 분석

1. 과학기술기본법의 총칙 개관

가. 총칙의 의의

총칙이라 함은 법 전체에 걸치는 원칙적 규정을 둔 법의 일부분을 의미한다.

“법 전체에 걸치는 원칙적 규정”의 내용과 범위가 어떠한가는 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총칙을 규정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민법과 형법을 들 수 있다. 민법의 경우에는 민법의 법원과 이념을 정한 통칙, 권리의 주체를 정한 자연인과 법인, 권리의 객체를 규정한 물건, 권리의 변동을 규정한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총칙이 구성되어 있다. 이 총칙을 기초로 물권, 채권편의 개별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²⁾ 형법의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범위 및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범죄의 성립, 형벌의 종류, 형의 양정, 기간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총칙에 규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칙에 각종 구체적인 범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법의 경우 총칙을 규정한 대표적인 예로는 행정절차법을 들 수 있다. 행정절차법의 총칙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행정절차의 당사자등,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³⁾

위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총칙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당해 법령의 적용범위, 당해 법령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 관련자의 의무, 당해 법령의 기본이념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설정과 당해 법률 전체를 일관할 수 있는 특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민법총칙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전체의 총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법 부분의 총칙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다. 민법의 구성에 관하여는, 곽윤직, 민법총칙, 39쪽 이하 참조.

3) 행정절차법 총칙에 관하여는 오준근, 행정절차법, 71쪽 이하 참조.

법률에 따라서는 장절편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경우 장절편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총칙과 다른 조문의 인위적 구별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장절편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의 모두에는 그 법률 전체를 총괄하는 일반적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총칙을 설정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의미의 총칙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있어서도 총칙부분에 구성되어야 할 요소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과학기술기본법 총칙의 구성요소

과학기술기본법의 총칙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전체를 개관하는 일반적·원칙적 규정이 포괄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그 구성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기본법이 어떠한 목적에 봉사하여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법의 목적을 규정하기 위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이유, 이 법의 제정으로써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용어의 선택의 요구된다.

둘째, 과학기술기본법에 특수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을 경우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 용어의 정의는 특히 국어사전에서 쓰이지 아니하는 특수한 용어를 정하고자 할 경우, 국어사전과 다른 특별한 의의를 해당 용어에 부여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 용어의 정의는 그 법률의 적용범위의 설정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의규정에 따라서 법의 적용영역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꼭 정의할 용어가 무엇인가를 신중히 선택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과학기술기본법의 적용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설정이 필요하다. 적용범위규정은 적극적인 범위의 한정, 소극적인 적용제외규정의 설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설정 등을 모두 포괄한다.

넷째, 과학기술기본법이 봉사해야 하는 특별한 이념이 있을 경우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념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 추구해야 할 이념을 모두 망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이념 중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이념이 있을 경우 이를 특별히 드러내어 규정한다.

다섯째,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의 설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정할 수 있다. 국가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담당하여야 할 의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담당하여야 할 의무,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등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연구개발의 담당자가 저야 할 책무의 규정도 필요하다면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기타 총괄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전체에 걸쳐 요구되는 규범이 필요한가를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발굴하여 기본법에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2. 제1조 목적

가.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조항은 그 법률이 규정하는 각종 작용수단과 방법을 요약·정리하고, 그 수단 등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전체적 의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목적조항은 위와 같은 의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 법률은 “어떠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목표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형식을 취하게 된다.

나. 과학기술기본법이 규정하는 주요한 수단

목적조항이 가지는 문장의 구조에 기초할 때 과학기술기본법이 규정하는 주요한 수단과 방법이 문장의 전반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진흥법은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을 규정하고 있다. 1998년의 국민회의안은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이념의 설정과 국가적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있고 조화있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체제를 제시함”을 규정한 바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구성요소로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이념 내지는 기본시책의 설정, 계획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위원회

의 활성화, 과학기술활동의 적절한 예측·조사 및 평가, 과학기술활동의 지원,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등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 회의과정에서 목적조항에 포함될 것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제시된 것이 과학기술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요약 정리한 결과 목적 조항의 전반부에는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 및 그 종합적 조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는 문장을 채택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하였다.

“향상”이라는 단어를 택한 이유는 기본법에 포함되는 용어는 항구성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진흥이나 혁신과 같은 용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였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선진화 등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의 선정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이 규정하여야 할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서 계획과 시책의 수립 및 그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이 요약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같은 행정조직은 종합적 조정의 기구로써 포괄될 수 있다는 점, 연구개발사업, 기금을 통한 지원 등은 각종 시책에 포괄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다. 제 1 차 목표

제1차 목표는 위의 “나” 목에서 규정된 사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제1차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진흥법은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들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국민회의안은 “국가적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있고 조화있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체제의 제시”를 들고 있다. 국민회의안이 규정하는 제1차 목표는 과학기술기본법이 달성하여야 할 제1차적 목표에 대한 표현으로서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제시”는 목표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축”과 같은 용어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논의가 있어 그 대안으로서 “국가적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있고 조화있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체제를 구축하여”라는 문장을 채택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라. 제2차 목표

제2차 목표는 위와 같은 목표달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 목표를 의미한다. 과학기술진흥법은 “경제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규정한다. 국민회의안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규정한 바 있다. 과학기술이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고려할 때 국민회의안이 제시하는 최종적 목표가 가장 광범위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내용의 검토에 따라 그 대안으로서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장을 채택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마. 대안

이상의 논의결과에 기초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잠정적으로 정하였다.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 및 그 종합적 조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 대안의 분석

과학기술기본법의 제1차적 목표로서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한” 계획의 시책과 수립 및 그 종합적 조정을 규정한 것은 일단 중립적이고 평이한 용어를 선택하자라는 것이었다. 과학기술진흥법의 “진흥”,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혁신”, 국민회의안은 “선진화”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진흥”은 진부한 느낌이고 “혁신”은 과격하며, “선진화”는 불투명하다는 생각들이 표출되어 일단 중립적인 용어로서 “향상”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조항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대안이기에 너무 평이하며, 매력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혁신”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127조에 입각한 것으로써 헌법적인 근거가 있고, “진흥”은 1960년대부터 과학기술진흥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우리 국가가 추구해온 법률용어이며,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부의 존립을 위한 근거용어로 자리잡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용어를 바꿈에 있어서는 법안을 논의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느낌이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서 심사숙고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전반을 지배하는 법의 목적조항에 과연 위 문안이 걸맞는가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과학기술기본법이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규범임을 분명히 하는 목적조항을 찾아냄에 대하여 학계와 연구계 및 업계의 고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가. 용어의 정의 조항의 의의

용어의 정의 조항은 그 법률의 내용 속에 포함된 용어 중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용어가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국어사전에서 쓰이지 아니하는 특수한 용어를 정하고자 할 경우, 국어사전과 다른 특별한 의의를 해당 용어에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용어를 정의하는 경우 그 법률상의 용어의 내용과 적용범위는 정의된 내용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는 또한 그 법률의 적용범위의 설정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용어의 정의가 있으면 그 용어의 의미는 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되며, 또한 이에 따라서 법의 적용영역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꼭 정의할 용어가 무엇인가를 신중히 선택할 것이 요구된다.

나. 과학기술관계법령의 용어의 정의

과학기술진흥법은 아무런 용어의 정의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도 아무런 용어의 정의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국민회의안도 아무런 용어의 정의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법률은 용어의 정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과학기술에 관련된 다른 법령 가운데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은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라 함은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초연구활동을 말한다”.

기술개발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①“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②“기술개발준비금”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준비금을 말한다. ③“국산신기술제품”이라 함은 “신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 및 그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규성의 기술을 창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⑥“기술수출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기술을 양도·제공하거나 그 실시에 관한 권리를 허여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다. “생명공학”이라 함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①“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②“소프트웨어”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 ③“시스템”이라 함은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 등 특정목적에 위하여 소프트웨어·각

중정보 및 관련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말한다”. ④“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유통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과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기획·개발 및 유지보수 등 일련의 정보 처리활동을 말한다”. ⑤“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관련기관 등을 일정지역 안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다. ①“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기업내의 전담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③“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 기술을 말한다”. ④“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다. ①“협동연구개발”이라 함은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기업·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학”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을 말한다. ③“기업”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외의 기업을 말하며,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포함한다”. ④“연구소”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 등”이라 한다)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은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다. ① “환경기술”이라 함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환경 피해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을 말한다. ㉠수질·대기오염물질 및 폐기물등 환경오염물질의 저감·처리기술, 소음·진동방지기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저감기술, 오염유발억제제품의 개발기술, 재활용·회수 및 재사용기술등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기술, 환경위해성평가 및 그 관리기술, 환경영향평가기술등 ㉣환경오염물질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기술, 측정기법의 개발기술 및 실용화기술등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기술등”. ②“환경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저감하거나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환경산업”이라 함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을 응용·활용하여 환경시설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용어의 정의

과학기술기본법에 용어의 정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의 제시가 있었다.

논의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과학기술”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이었다. 지적의 내용은 영문으로도 “Science and Technology”이므로 “과학과 기술” 또는 “과학·기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이 별개의 단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학기술이라는 용어는 과학적 기술이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는 등 과학이 기술에 종속되어있고, 과학이 기술을 위한 수단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긴다는 점이였다.

과학과 기술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과학이 무엇인가, 기술이 무엇인가, 기능이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용어의 정의가 시도되고 있기는 하나 통일적인 용어의 정리는 되어있지 아니하다.

바로 이와 같은 점이 과학기술기본법에 용어의 정의를 도입하는 것을 어렵

게 하는 부분이다. 논란이 있고 통일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용어에 대하여 법에 일정한 방향으로 정의하면 그 용어는 법률용어로 정착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특정한 용어를 정의하지 아니하면 학술의 발전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정책의 구현이 될 수 있는 것을 용어의 정의를 통하여 정책의 구현을 법적으로 구속하고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고려에 따라 일단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과학과 기술, 기능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포괄하지 아니하기로 잠정적으로 논의하였다.

4. 제2조 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이념

가. 기본이념조항의 의의

기본이념이라 함은 어느 법률의 기본적 사상, 어느 법률에 관련된 모든 중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상적 기초를 의미한다.

기본이념은 교육, 농업, 환경정책 등 국가가 일정한 분야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념이 있을 때, 이를 법적으로 선언하고 확인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관련주체가 이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규정된다.

기본이념조항은 그 법과 관계된 이념을 선언하는 경우, 기본원칙의 형태로 선언하는 경우,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형태로 선언하는 경우, 이념의 선언과 기본방향을 설정을 함께 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나. 다른 법률에 설정된 기본이념규정의 예

“기본이념” 규정은 특히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 다수의 법률에서 발견된다.

교육기본법의 경우를 들어보자. 교육기본법은 第2條에서 다음과 같은 教育理念을 설정하고 있다. “教育은 弘益人間的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도야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民主市民으로서 필요한 資質을 갖추게 하여 人間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民主國家의 발전과 人類共榮의 理想을 實現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 이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사와 같은 교육종사자와 학부모까지도 준수하여야 하는 이상으로 설정된 것이다.

농업기본법이 정하는 기본이념도 이와 같다. 농업기본법은 第2條에서 基本理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農業은 國民의 食糧을 안정적으로 供給하고 國土環境保全에 이바지하는 등 經濟的·公益的 기능을 수행하는 基幹産業으로서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의 基盤이 되도록 하고, 農業人은 自律과 創意를 바탕으로 다른 産業從事者와 균형된 所得을 실현하는 經濟主體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農村은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産業·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이를 未來世代에 承繼되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이 이념은 농업과 농업인, 농촌 등 농업과 관련된 기본요소가 국가적으로 보호받고 조성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노력하여야 함을 이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하는 환경정책의 기본이념도 이와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은 第2條에서 基本理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環境의 質的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快適한 環境의 造成 및 이를 통한 人間과 環境間의 調和와 균형의 유지는 國民의 건강과 文化的인 生活의 享有 및 國土의 보전과 항구적인 國家發展에 必須不可缺한 要素임에 비추어 國家·地方自治團體·事業者 및 國民은 環境을 보다 良好한 상태로 유지·造成하도록 노력하고, 環境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國民으로 하여금 그 惠澤을 널리 享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世代에게 繼承될 수 있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이념규정은 환경보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모두에게 정신적인 이념으로써 존중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 밖에도 기본이념을 규정한 경우는 다수의 기본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第2條에서 基本理念으로써 “社會保障은 모든 國民이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國民 개개인이 生活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制度와 與件을 造成하여, 그 施行에 있어 衡平과 효율의 調和를 기함으로써 福祉社會를 實現하는 것을 基本理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第2條 基本理念으로써 “이 法은 개인의 尊嚴을 기초로 하여 男女平等의 촉진, 母性의 보호, 性差別的 意識의 解消 및 女性의 能力開發을 통하여 건강한 家庭의 具現과 國家 및 社會의 발전에 男女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責任을 分擔할 수 있도록 함을 그 基本理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第2條 基本理念으로써 “青少年이 社會構成員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權益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活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未來社會의 主役으로서 國家와 社會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民主市民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第1項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長期的·綜合的 青少年育成政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사항을 그 推進方向으로 한다. ①青少年的 創意성과 自律성에 기초한 能動的 삶의 實現, ②青少年的 成長與件과 社會環境의 개선, ③民主·福祉·統一祖國에 대비하는 青少年의 資質向上”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기본이념을 직접 제목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색다른 방식으로 선언하고 있다. 먼저 第4條에 規制法定主義라는 이름의 조항을 두어 “①規制는 法律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用語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規定되어야 한다. ②規制는 法律에 직접 規定하되, 規制의 세부적인 내용은 法律 또는 上位法令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大統領令·總理令·部令 또는 條例·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法令이 專門的·技術的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業務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告示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行政機關은 法律에 근거하지 아니한 規制로 國民의 權利를 제한하거나 義務를 賦課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어서 第5條에 規制의 원칙이라는 제목을 설정하여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하고, 規制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本質的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生命·保健과 環境등을 보호하기 위한 規制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規制의 대상과 手段은 規制의 目的을 實現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設定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본원칙을 설정하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정책의 주체가 정책수행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본이념을 설정하는 경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은 第2條 基本原則으로써 “國家는 이 法의 運用에 있어서 勤勞者의 職業選擇의 自由, 勤勞의 權利, 事業主의 雇傭管理에 관한 自主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能力을 開發하고자 하는 勤勞者의 意慾을 북돋우고 雇傭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事業主가 주도적인 役割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第3條 情報化施策의 기본원칙으로써 “政府는 情報化促進 등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원칙에 따라 諸般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民間投資의 擴大와 公正競爭 촉진, ②環境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응하는 制度의 수립·施行, ③情報通信基盤에 대한 자유로운 接近과 活用, ④地域的·經濟的 차별이 없는 均등한 조건의 普遍的 役務 提供, ⑤개인의 私生活 및 知的所有權의 보호와 각종 情報資料의 安全性 유지, ⑥國際協力の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다. 과학기술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이념

과학기술기본법에 어떠한 내용이 기본이념으로 담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직접 관련된 50개의 법률 속에도 과학기술의 기본이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과학기술의 기본이념을 직접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27조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및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은 국가에게 부여된 헌법적 의무이자, 국가가 과학기술에 종사하여야 할 이념이 된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이념규정은 이와 같은 헌법규정을 구체화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 및 모든 과학기술종사자가 가꾸고 이룩해내야 할 사상·원칙·방향 등을 찾아내고 이를 선언하며 확인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과학기술기본법의 이념규정에 대한 논의

과학기술기본법에 이념규정을 도입함에 대한 논의는 1998년에 공청회에 제시되었던 국민회의안이 규정하는 제2조 기본이념 규정, 제21조 윤리적 기술개발 규정, 제22조 환경과의 조화규정등을 과학기술기본법안에 입법화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국민회의안 제2조는 (기본이념)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①복합적으로 변천해 나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의 자주

제2장 총칙의 분석

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국가사회발전이념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간주체적인 과학기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주체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모든 연구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전주기성 연구개발체제를 확립하고,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체제의 개선과 그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전략을 강화하고,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를 조기에 구축하여 범국가적 과학기술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국민회의안 제21조는 (윤리적인 기술개발)이라는 제목하에 “정부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활용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관 및 윤리의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회의안 제22조는 (환경과의 조화)라는 제목하에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전통또는 현재사회의 지식·기술·생활양식 및 관행을 보전·이용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이익이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규정된 여러 이념규정을 요약할 때 과학기술인력을 포함한 국가 과학기술자원의 가치의 존중 및 그 고도화, 과학기술인의 자주성과 창의성의 극대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활용과 환경적 및 윤리적 가치관과의 조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을 구성하도록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제2조 (기본이념) ①과학기술인력을 포함한 국가 과학기술자원의 전략적 가치는 존중되며, 그 고도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②모든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인의 자주성과 창의성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③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활용은 환경적 및 윤리적 가치관과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마. 과학기술기본법의 이념규정의 분석

위에서 제시한 기본이념규정은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예시에 지나지 아니한다. 기본이념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업, 더 나아가 과학기술종사자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사상적 기초요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이므로 선언된 개별적 내용이 정말 합당한 기본이념인가, 다른 더 중요한 기본이념이 빠진 것은 없는가 등이 검토되고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5.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적용범위 조항의 의의

헌법을 제외한 국회에서 제정한 모든 법률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 상호간에 효력의 우월을 설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의 일반원칙상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 새로 만들어진 법과 과거에 만들어진 법 상호간에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민법과 상법, 상법과 어음법의 관계 처럼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의 규정을 특별히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위와 같은 일반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적용범위를 설정하고자 할 때 각각의 법률은 적용범위조항을 둔다.

첫째, 소극적으로 당해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할 영역을 정하고자 할 때 적용범위조항이 설정된다.

둘째, 적극적으로 당해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영역을 정하고자 할 때 적용범위조항이 설정된다.

기본법 성격의 법률의 경우 특히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들 수 있다.

제1모델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조와 같이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적용범위만을 표현하는 경우이다.⁴⁾

제2모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의 경우와 같이 “건설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4) 전자거래기본법 제3조 “이 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법률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지위에 있음을 선언하는 경우이다.⁵⁾

제3모델은 국제기본법 제3조와 같이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률이 관련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함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⁶⁾

제4모델은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와 같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금에 관한 한 당해 법률이 우선적 지위를 가짐을 특별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다.

제5모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와 같이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률이 가지는 우선적 지위가 장래에까지 담보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나. 과학기술기본법의 적용범위

과학기술기본법에 적용범위 내지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이 조항의 필요성 여하가 논의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일반적 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적용범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다만 1998년 12월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은 “이 법은 다른 과학기술관련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또한 과학기술관련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이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특히 적극적으로 선언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의 인정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대안이 마련되었다.

5) 영상진흥기본법 제3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업훈련기본법 제3조 “직업훈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민방위기본법 제4조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청소년기본법 제4조 “이 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적용범위조항의 분석

대안으로 제시된 적용범위조항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과학기술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는 조항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위에서 기본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다. 기본법의 우월적 효력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제1항의 규정은 잘못된 것이다. 그 반면에 일정한 행정부서가 특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을 제정·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종합조정 기능을 하는 기본법과 개별적인 정책분야에 대한 집행법을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또 집행법을 운용하는 행정부서는 기본법을 존중하고 기본법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 하며, 기본법의 정신에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함을 긍정한다면 제1항의 규정은 타당성이 있다. 제1항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행정기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 나갈 경우 과학기술기본법과 개별적 집행법의 위계질서를 존중하여 법의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과학기술분야에 속한 다수의 법률 상호간에 일정한 체계가 형성되고, 종합적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항은 과학기술에 관한 장래의 입법자를 구속하는 규정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된 이상 모든 과학기술관련법령은 과학기술기본법을 정점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장차 새로운 과학기술관련법령이 제정됨에 있어 이 체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과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별법의 제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또 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새로운 법령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갖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현재의 과학기술관련입법의 정점에 섬을 규정하고, 장래의 입법도 이 법률과 부합하여야 함을 선언

하는 제3조는 법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찬반의 논쟁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개별적 내용 검토를 통하여 과연 이와 같이 논란이 있는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또 그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가 심사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6. 제4조 과학기술관련 주체의 책무

가. 관련주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의 의의

특정한 법률의 영역과 관련된 주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과 같이 법률이 정하는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주체가 어떠한 의무를 지는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관련주체에게 과학기술의 혁신과 같은 특정한 목적의 성취에 관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주체는 그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직과 예산을 갖추어야 하며, 정책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체 등 관련민간주체는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시책의 강구”에 관한 규정과 그 내용적 체도를 같이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주체 등 과학기술관련자의 책무 등 함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관련주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네가지 모델을 들 수 있다.

제1모델은 국가의 책무만을 간단하게 규정하는 방법이다. 그 예로 관광기본법을 들 수 있다. 관광기본법 제2조는 정부의 시책만을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⁷⁾

제2모델은 여러 관련주체의 책무를 별개의 조문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제2모델은 다시 제2-1모델과 제2-2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제2-1모델은 각각의 관련주체를 각각의 별개의 조문으로 구성하는 방법임. 그 예로 자격기본법은 제4조에서 국가의 책무를, 제5조에서 자격취득자의 성

7) 영상진흥법 제5조는 정부의 시책만을 규정함. 정보통신기본법 제4조는 정부의 시책만을 간단히 규정함.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조는 정보통신시책의 기본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정부의 시책만을 규정함. 국가표준기본법은 제2장 제4조에 정부의 시책만을 간단히 규정함

실의무를 규정한다.

제2-2모델은 각각의 관련주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등이라는 제목하에 하나의 조문을 두고 항을 나누어 구성하고, 다른 조문에 연구개발주체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그 예로 환경정책기본법을 들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5조에 사업자의 책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⁸⁾

제3모델은 하나의 조문 속에 을 나누어 여러 관련주체의 책무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는 건설관련주체의 책무라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 조문 속에 제1항은 정부, 제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제3항은 건설업자의 책무를 규정한다.⁹⁾

제4모델은 연구개발주체와 같이 관련 국민의 책무만을 규정한 후,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할 의무에 관하여 국가의 시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라는 제목하에 조문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 예로 고용정책기본법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는 “국가의 시책”이라는 제목하에 국가가 고용정책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책무에 관한 조항은 제3조에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다.¹⁰⁾

나. 과학기술에 관한 관련주체의 책무

과학기술관련주체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과학기술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총괄적 법률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규정하는 책무조항의 검토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진흥법은 국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이 부과하는 국가의 책무는 제2조(기본시책의 강구)라는 제목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
- 8) 사회보장기본법은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7조에서 국민의 책임을 나누어 규정함. 여성발전기본법은 제4조에서 국민의 책무를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나누어 규정함. 중소기업기본법은 제3조에 정부등의 책무라는 제목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4조에 중소기업자등의 책무를 나누어 규정함.
- 9) 농업·농촌기본법은 제4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를 항을 나누어 구성함.
- 10) 청소년기본법은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6조 가정의 책임, 제7조 사회의 책임,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각각 나누어 규정한 후, 제9조에 청소년교류의 진흥등이라는 제목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수립의무를 다시 규정하고 있음.

“국가는 국민의 자발적인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장려·육성하고,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산업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신기술을 보급·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제1모델을 취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국가 등의 책무라는 제목하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에 부응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제3모델을 취하고 있다.

1998년에 공청회에 회부된 바 있는 국민회의안은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제목 하에 “①국가는 과학기술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연구인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문화의 창달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 또는 기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 및 종합조정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을 제3모델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모델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대안이 잠정적으로 마련되었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과학기술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과학기술 연구인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문화의 창달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 또는 기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학·연구기관·기업·개인 등 (이하 "과학기술관련주체"라 한다)가 과학기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그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합조정체제의 구축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과학기술에 관한 관련주체의 책무규정의 분석

위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조항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항은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다.

국가의 책무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①과학기술 연구활동의 장려
- ②과학기술 연구인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의 추진
- ③국제적 협력과 교류의 증진
- ④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자원 활용의 극대화
- ⑤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제고
- ⑥과학문화의 창달
- ⑦제1점 내지 제6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2항은 과학기술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①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함
- ②지역적 특성을 고려함
- ③제1점과 제2점의 고려를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함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할 의무를 다시금 부과한다.

이 의무규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시행할 의무를 진다.
- ②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조치는 법제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 금융상의 조치 등을 비롯하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이다.

제4항은 국가에게 종합조정체계의 구축의무를 다시금 부과한다.

①과학기술관련주체의 의미를 명백히 한다. 과학기술관련주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 과학기술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가 포함된다.

②국가는 과학기술관련주체의 종합조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종합조정체제구축의 목적은 이들 과학기술관련주체가 과학기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그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제4조는 국가의 책무를 네 개의 항에 걸쳐 다각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국민회의안의 규정을 검토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84개의 법률에 대한 검토는 전제되지 아니한 것이다. 과학기술주체의 책무규정이 과학기술의 이념과 연결되어야 하고, 국가정책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폭넓은 검토가 요구된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위와 같이 열거함이 타당한 것인지, 국가의 책무의 본질적인 내용이 위에서 열거한 항목속에 잘 요약되어있는지의 여부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분석

1. 계획규정의 의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행정작용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 목표로 정한 장래의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라고 정의된다.¹¹⁾

행정계획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첫째, 행정계획은 목표설정적 기능을 가진다. 이 기능은 현대행정의 구조적 특색에서 유래한다. 왜냐하면 현대 행정의 중점이 장래에 향하여 사회·경제·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보다 나은 질서를 유도·창조하기 위한 적극적 형성활동으로 옮겨졌고, 이 미래 지향적인 형성활동을 위하여는 미리 장래에의 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계획의 이러한 목표설정적 기능은 행정계획이 수시로 변해가는 현실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¹²⁾

둘째, 행정계획은 종합화기능을 가진다.¹³⁾ 이 기능은 현대행정수요의 다양화에서 유래한다. 현대 행정은 그 행정수요가 다양화함에 따라 점차로 기술화·전문화되고 있고, 그 결과 행정조직과 행정수단이 개별화·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세분화된 행정기관이 단편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의 할거주의의 폐단을 가져올 우려를 안고 있다. 행정계획은 이러한 세분화된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행정조치를 일정한 목표와의 관련 밑에서 상호 입체

11)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337쪽 이하; 김남진, 행정법 I, 376쪽 이하; 박윤훈, 최신행정법강의(상), 259쪽 이하; 김동희, 행정법 I, 159쪽 이하; 석종현, 행정법강의 I, 323쪽 이하 등 참조.

12) 행정계획의 목표설정적 기능에 관하여는 Kaiser J., Der Plan als Institut des Rechtsstaates und der Marktwirtschaft, in: Kaiser (Hrsg.), Planung, Bd. II, S. 11 ff.

13) 행정계획의 종합화 기능에 관하여는 Ipsen, Rechtsfragen der Wirtschaftsplannung, in: Kaiser (Hrsg.), Planung, Bd. I, S. 35 ff.

적·유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전체적인 행동방향을 종합화하고 체계화하여 행정능률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기능은 상충되는 각종 행정수단간의 조정과 이에 얽히는 각종 이해관계간의 조정기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셋째, 행정계획은 행정과 국민간의 매개 기능을 가진다.¹⁴⁾ 이 기능에 의해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정의 목표와 그의 실현을 위한 수단을 미리 알림으로써, 미래에 대한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그 협력을 얻게 하는 기능이 있는 동시에, 국민의 장래의 활동에 대하여 지침적·유도적 효과와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행정계획이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과학기술기본법에 행정계획으로서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도입함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 과학기술에 관한 계획규정

과학기술기본법에 어떠한 내용의 계획규정을 담을 것인가, 또 이 계획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 수립하도록 할 것인가, 계획에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관련 현행법제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기초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은 일단 과학기술예측, 과학기술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 네 개의 조항을 설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조항의 설정은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국민회의안의 검토를 통하여 기본안을 설정하고, 논의과정에서 그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관련법령의 종합적 검토 및 다른 기본법의 검토는 전제되지 아니하였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개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3. 제5조 과학기술예측

가. 과학기술예측규정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예측은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국가의 기본시책의 수립 및 과학기술

14) 행정계획의 매개기능에 관하여는 Imboden, Die Planung als verwaltungsrechtliches Institut, VVDStRL 18 (1960), S. 113 ff.

계획의 수립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활동이다. 미래의 예측이 없이는 계획의 수립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과학기술진흥법은 과학기술예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정기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에 관한 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기타 공·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기타 공·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은 과학기술예측에 관하여 진흥법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①정부는 정기적으로 과학기술발전의 동향을 분석하고 신기술의 추세를 예측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을 예측함에 있어서 그 과학기술이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법내용의 검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었다.

제5조 (과학기술예측)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본시책 및 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정기적으로 예측하여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예측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이 갖는 기술적 가치는 물론 초래할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 여러 부문에 대한 편익증진효과 및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분석·평가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술의 실용적 가치와는 별도로 미래를 대비할 기반기술을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에 관한 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기타 공·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기관 및 기타 공·사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예측조항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과학기술예측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정부가 과학기술을 예측하는 목적은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본시책 및 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함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정기적으로 예측할 의무와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2항은 과학기술의 예측이 그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할 요소를 정한 것이다.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① 새로운 기술이 갖는 기술적 가치
- ② 새로운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 여러 부문에 대한 편익증진효과 및 부작용
- ③ 당해 기술의 실용적 가치
- ④ 미래를 대비할 기반기술의 발굴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검토·분석·평가하고, 이에 대비할 의무를 진다.

제3항과 제4항은 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규정한 것이다. 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에 자료제공요청권을 부여하고, 요청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료제공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에 있어 혹시 있을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한 것이다.

이 규정은 몇가지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예측의 주체를 "정부"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을 수행하는 행정부서는 모두 각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추세에 관하여 스스로 장기적인 예측을 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함을 전제로 하는 듯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와 같은 보고에 입각하여 과학기술예측을 종합하여야 하나, 이 점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과학기술예측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예측을 종합화하는 절차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 이 조항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제6조 과학기술기본계획

가. 과학기술기본계획규정의 의의와 내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규정은 과학기술정책의 수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 또 어떠한 절차로 이를 수립할 것인가, 계획에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과학기술관련법령과 각종 기본법의 검토에 입각한 깊이 있는 토론이 요구된다.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은 일단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을 기초로 하여 계획규정을 논의하였다.

과학기술진흥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 3 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중·장기 경제사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관리한다.

1. 과학기술연구개발계획
2. 과학기술인력개발계획
3. 과학기술투자계획
4. 과학기술정보유통계획
5. 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설립 육성 계획
6.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협동연구 개발촉진계획
7. 국제과학기술협력계획
8.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 촉진에 관한 계획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계획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관리한다.

제 3 장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분석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 3 조 (과학기술5개년계획의 수립) ①科學技術部長官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革新 5個年計劃(이하 “革新計劃”이라 한다)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의 協議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수립한다.

②第1項의 革新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計劃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政府가 추진하는 研究開發事業(이하 “國家研究開發事業”이라 한다)의 投資 財源의 擴大目標 및 推進計劃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重點國家研究開發 事業 推進計劃
3. 基礎研究를 위한 投資擴大의 目標를 포함 한 基礎研究振興計劃
4. 理工系大學의 研究活性化, 人力養成 및 活用計劃
5. 엔지니어링技術 振興計
6. 國防分野의 研究開發投資의 확대 및 民·軍 兼用技術開發計劃
7. 中小企業을 포함한 企業의 技術開發支援 計劃
8. 科學技術教育의 內실화 및 施設擴充計劃
9. 科學技術分野의 情報流通 및 研究施設의 확충 등 科學技術의 基盤造成計劃
10. 社會間接資本關聯 技術開發計劃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科學技術 革新에 관한 重要計劃

③第2項의 革新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産·學·研 協同研究 및 國際科學技術協力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회의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 5 조 (과학기술기본계획)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학기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수급
3.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지출
4. 연구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연구개발환경의 첨단화
5. 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용
6.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촉진
7. 국제과학기술협력
8.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

9.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촉진

10.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관련 중앙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임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기타 공·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기본계획의 실행에 관한 당해연도의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추진계획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관련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업무총괄 전담요원을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마련되었다.

제6조 (과학기술기본계획)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목표 달성에 필요한 국가과학기술목표 및 과학기술전략목표
2. 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3. 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및 양성
4. 국가과학기술 기반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
5.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조달·지출계획
6. 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용
7.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 및 기초과학의 진흥
8.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촉진
9.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10. 개발된 기술 실용화 및 기술이전 촉진
11. 국제과학기술협력
12.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 촉진
13. 연구시설의 개선 및 확보 등 연구개발환경의 첨단화
1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계획

②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한다. 단 계획기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부처별 또는 자치단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관계 중앙부처별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본계획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임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기타 공·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기본계획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수립절차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서는 다음의 열네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1. 국가목표 달성에 필요한 국가과학기술목표 및 과학기술전략목표
2. 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3. 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및 양성
4. 국가과학기술 기반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
5.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조달·지출계획
6. 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용
7.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 및 기초과학의 진흥
8.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촉진
9.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10. 개발된 기술 실용화 및 기술이전 촉진
11. 국제과학기술협력
12.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 촉진
13. 연구시설의 개선 및 확보 등 연구개발환경의 첨단화
1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계획

제2항은 기본계획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즉 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하되, 계획기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결로 가감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제3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거쳐 수립된 기본계획이 정부 전체의 기본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된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부처별 또는 자치단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설정한 것이다.

제4항은 정부에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관계중앙부처별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본계획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제5항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임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제6항은 계획수립의 주체에게 관계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기타 공·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에게 자료제공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은 잠정적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과학기술관련법령 및 다른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전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안이라는 점이다.

이 안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정부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 각 부처가 스스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그 보고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설정한 듯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정을 뒷받침할 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둘째, 제3항에 규정된 부처별 기본계획 및 광역자치단체별 기본계획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하다. 각 부처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이를 집대성하는 형식과 절차를 취한다면 굳이 부처별 및 광역자치단체별 기본계획이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하는 등 특정하고, 그 절차를 분명히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다른 과학기술관련계획과의 연관성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른 법령에 의한 과학기술관련계획의 수립에 있어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기본계획과의 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점 이외에도 보다 심도 높은 분석을 통하여 법의 내용을 정비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5.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가. 연도별시행계획규정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기본계획이 5년을 단위로 하는 중장기계획이고, 총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매년 시행함에 관한 연도별시행계획규정은 필요하다.

연도별시행계획에 관하여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혁신5개년계획에 관한 조항의 내용 속에 규정한 바 있다. “④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革新計劃에 따라 年度別 施行計劃을 수립·추진하고, 당해 年度의 計劃 및 前年度의 推進實績을 科學技術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科學技術部長官은 革新計劃의 前年度 推進實績 및 당해年度 推進計劃을 종합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잠정적으로 마련되었다.

제7조 (연도별시행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당해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2년 이상에 걸치는 장기계획의 추진실적의 제출은 사업의 종료시에 한한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기초하여 기본계획의 실행에 관한 당해연도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연도별시행계획규정의 분석

제1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당해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함께 부여하였다.

과학기술계의 요구에 따라, 2년 이상에 걸치는 장기계획의 추진실적의 제출은 사업의 종료시에 한하도록 하였다. 장기계획의 경우 추진실적이 사업연도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매년 보고하게 할 경우 계획사업의 추진보다는 실적의 보고에 매달려 사업의 수행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제2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기초하여 기본계획의 실행에 관한 당해연도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정기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매년 일정한 궤도를 정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스스로 설정한 부처별 및 자치단체별 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안으로 표현된 대안의 내용은 이 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행에 관한 과학기술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관련주체의 역할이 보다 분명히 정립될 것이 요구된다.

6.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규정의 의의 및 내용

1990년대 후반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지방화시대라 불리워진다. 지방화시대의 초입에 해당하는 시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 및 산업 여건의 불균등이 심화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과학기술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비중도 매우 적다. 1995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예산총액은 1,274억원으로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예산

24,764억원의 5.2%에 불과하다고 보고되어 있다.¹⁵⁾

따라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소득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방 특화 산업의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고유기술개발이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지방과학기술종합 계획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도입하고 있다.

①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을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의 상호유기적 연계 및 집적에 따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소재의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위와 같은 조항의 내용을 받아들여 대안이 잠정적으로 마련되었다.

15)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해설집, 1997, 79쪽 참조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 목적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절차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직접 수립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된다.

제2항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 목록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은 정부에게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 절차로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연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전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각 자치단체가 구체화한 것이고, 후자는 정부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체계적으로 설정될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각 부처가 스스로의 부처별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추측될 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그 절차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계획의 수립 및 통보의 체제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지원의무 및 지원수단을 규정한 후, 그 개별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다른 체계와 내용을 따르도록 할 것인가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의 여러 측면을 보다 깊이 검토하고 법안을 가다듬을 것이 요구된다.

제 4 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분석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정의 의의 및 필요성

가. 위원회의 의의와 종류

현행 과학기술관련법령은 대부분 그 의사를 심의하거나 자문하거나 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회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갖는 것인가는 위원회마다 다르다.

정부조직법은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권한을 갖는 기관 즉 행정관청의 조직에 있어서 독립제 행정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제 행정조직인 행정위원회가 행정관청이 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4조의2에 규정된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제4조의2)”는 규정이 그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성격을 갖는 행정위원회의 대표적 형태이다.

행정관청으로서의 행정위원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행정관청이 표시할 국가의사를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국가기관은 “의결기관”으로 분류된다. 과학기술관계 각종 위원회중 원자력위원회, 통신위원회, 전산망조정위원회등은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보유함이 근거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 의결기관은 국가의사를 의결함에 그치고, 그 이상 나아가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여 국가를 대표할 권한까지는 없다는 점에서 행정관청으로서의 행정위원회와는 구별되며, 국가의사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문기관과는 구별된다. 원자력위원회, 통신위원회, 전산망조정위원회등이 의결한 사항은 행정관청을 기속하며, 행정관청이 유효하게 국가의사를 표시 집행하는 요건이 된다.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진하여 행정관청에게 의견을 제공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자문기관”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과학기술관계위원회는 자문기관에 해당된다. 원자력위원회, 통신위원회, 전산망조정위원회등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정책의 심의 및 자문기능을 갖고, 필요한 경우에 의결기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도 보유한다. 이들 기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위원회는 정책의 심의·협의·의견제시등의 기능만을 가질 뿐이다. 이들 자문기관이 제시한 의견은 법률상 당해 관청을 기속하는 힘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기관과는 구분된다.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999.1.21. 공포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개정 법률에 도입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과학기술정책의 심의기구이다. 심의기구라는 뜻은 자문기구와 의결기구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이 위원회에서는 안전을 의결하지 아니한다. 안전에 대한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이 의견만을 듣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안전은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안전의 제안, 안전에 대한 설명, 토의가 있다는 뜻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진흥법이 규정하였던 종합과학기술심의회외의 규정을 격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제9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규정의 의의 및 내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政府는 科學技術關係部處간 긴밀한 協助體制 구축과 科學技術關聯 主要政策·研究開發計劃·事業의 調整 및 豫算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둔다.

②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主要政策 및 計劃의 수립·調整에 관한 사항
2. 革新計劃에 관한 사항
3. 科學技術關聯豫算의 擴大方案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國家研究開發事業의 優先順位 設定 등 事前調整과 豫算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政府出捐研究機關등의 設立·운영 및 육성에 관한 法律에 의한 基礎技術 研究會·産業技術研究會 및 公共技術研究會의 評價와 發展方案에 관한 사항
6. 大統領令이 정하는 研究機關의 評價와 發展方案에 관한 사항

- 7.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審議를 요청하는 사항
- 8. 기타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이상의 조항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잠정적으로 마련되었다.

제9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정책·계획·사업의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과학기술관련주체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과학기술 목표 수립 및 전략목표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연도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국책사업의 과학적 타당성 및 국가전략 목표와의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7. 매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등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설립한 과학기술관련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자 우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0.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주체는 정부이다.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정책·계획·사업의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과학기술관련주체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다.

제2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11개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1. 국가 과학기술 목표 수립 및 전략목표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연도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국책사업의 과학적 타당성 및 국가전략 목표와의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7. 매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등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설립한 과학기술관련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자 우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0.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규정한 이와 같은 조항에 대하여는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각 항목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3.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의 의의 및 내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에서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현행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가 중립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에 근거한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중점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다. 즉 과학기술정책의 직접적 집행자로서 선수의 위치에 선다.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적 조정자이다. 과학기술부장관이 이 위원회의 간사가 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이다”는 것이 그 비판의 논거이다.

그러나 이 비판에 대하여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정부조직법은 과학기술부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정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은 과학기술부의 임무이다. 위에서 제시된 반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경제부가 스스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경제정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선수가 심판을 겸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자명해진다. 과학기술부가 설치되어있는 이상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그 종합적 조정의 권한은 계속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립된 논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여러 가지 대안이 도출되었다.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1안, 제2안 및 제3안으로 제시되었다.

(1) 제1안

제1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아닌 제3자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로 한다. 간사는 상근으로 한다. 대통령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한다는 점 등을 골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0조 제1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예산처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환경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관련부처의 장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11인 이내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과학기술관련 3개 연구회의 이사장 각 1인
3.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근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제2항제3호에 정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간사위원이 이를 통할한다.

⑤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⑥위원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및 조사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⑦기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2안

제2안은 현행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구성되었다.

즉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가 되고, 별도의 사무처는 설치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2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大統領이 되고, 委員은 다음各號의 者가 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이에 준하는 機關의 長
2. 科學技術에 관한 專門知識 및 經驗이 풍부한 者중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

③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幹事委員 1人을 두되, 幹事委員은 科學技術部長官이 된다.

④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事務는 幹事委員이 처리한다.

⑤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上程할 案件을 사전에 檢討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科學技術委員會가 위임한 案件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⑥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3) 제3안

제3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비상근의 간사위원을 두고, 사무처를 독립한 기구로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구성된 것이다. 제1안과 같이 국가기술위원회에 독립한 사무처를 설치하고 장관급의 간사위원을 상근자로 둔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독립한 행정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기구의 설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에 준하는 예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상시 활동할 행정위원회로서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민간 과학기술 종사인이 폭 넓게 참여하도록 하려면 정부부처의 신설로 이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의 폭넓은 참여가 인정되는 민간위원회의 형태가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논의의 내용에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민간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모델에 따라 제3안이 구성되었다.

제10조 제3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1인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무총리가 아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⑦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및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⑨제8항에 사무기구는 총리실에 두며 간사위원이 통할한다.

⑩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⑪위원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및 조사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⑫기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의 분석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와 같은 세가지 안의 경우 다 각각 다른 장단점이 있다.

제1안의 경우는 독립한 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다. 그 반면에 장관급의 상근 간사위원과 독립한 사무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과학기술처라는 정부부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신설된 정부부처에는 직제와 이에 따른 인력이 요구되며, 독립한 기능과 예산의 배분이 요구된다. 이 점은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제1안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즉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에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를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민간인위원의 추천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제2안의 경우는 과학기술부의 기능이 존중된다는 점, 별도의 행정기구가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그 장점이 있다. 그 반면에 정책의 집행부서인 과학기술부에 종합조정기능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비판에 입각한다면 이 점이 문제점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과학기술부의 설치가 과학기술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그 종합조정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위와 같은 비판은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지나치게 견제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한 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다른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3안의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민간의 참여의 폭을 최대한 확대시켰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된다. 그 반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의 종합조정기구이므로 정부부처의 사업의 조정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부처 상호간의 조정기능이 비교적 축소되어버린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위와 같은 대안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2002년까지만 시한을 가지는 한시법이라는 점이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5년동안 국가의 역량의 결집할 목적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기구를 특별법에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장차 항구적으로도 이와 같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심의기구의 형태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정부내의 심의·의결기구의 형태로 재구성할 것인가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각각의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보다 깊은 토론과 바른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제11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통보 등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통보 등의 규정의 의의 및 내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통보 등의 규정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그 審議結果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 科學技術施策 및 科學技術關聯 豫算에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結果를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비록 의결은 하지 아니하지만 심의를 통하여 개별적인 안건을 논의한다. 그 결과 합의 등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심의결과의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대안이 마련되었다.

제11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및 관련 광역자치단체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과학기술시책 및 과학기술관련 예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통보 등의 규정의 분석

제1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게 그 심의결과의 통보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심의결과 통보의 대상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및 관련 광역자치단체 장이다.

국무조정실장을 새로이 포함시킨 것은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출연기관의 설립 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의 이사회와 각 이사회에 소속된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기관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제2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과학기술시책 및 과학기술관련 예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규정이다. 다만 “심의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심의는 의결이 아니라 일정한 안전에 대하여 검토하고 토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기능 속에 의결기능을 포함시키고, 의결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도록 통보하도록 하는 등 통보하여야 할 내용을 분명히 하는 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5. 제12조 지방과학기술협의회

가. 지방과학기술협의회 규정의 의의 및 내용

지방과학기술협의회의 규정은 정부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도입한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지방과학기술협의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①政府는 地方科學技術振興施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地方科學技術振興協議會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地方科學技術振興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이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마련되었다.

제12조 (지방과학기술협의회) ①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지방과학기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지방과학기술협의회 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지방과학기술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 목적은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제2항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심의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 내용에는 다음 네가지의 항목이 포함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은 5년을 한시법으로 마련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따른 기구인 지방과학기술협의회를 장차 과학기술기본법에 항구적인 기구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검토에서 그 논의가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화시대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이 기구의 상설화가 요구된다. 이 기구를 상설할 경우 이 기구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가, 심의·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결과에 대한 효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6. 제13조 과학기술전담요원등의 지정

가. 과학기술전담요원등의 지정규정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규정은 과학기술진흥법이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인력을 마련할 의무를 과학기술관련부서에 부여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었다.

과학기술전담요원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될 경우 과학기술기본계획, 부처별 및 자치단체별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등이 보다 충실해질 수 있고, 구체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집행에 있어 업무의 총괄 및 대외협의를

할 전문적인 창구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은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審議會의 委員인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는 그 소속公務員중에서 科學技術振興에 관련된 業務總括 및 對外協議를 담당할 科學技術專擔要員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科學技術專擔要員의 지정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검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잠정적으로 마련되었다.

제13조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소관 과학기술정책에 관련된 업무총괄 및 대외협의를 담당할 과학기술전담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과학기술전담요원 등의 지정규정의 분석

제1항은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다.

전담요원의 대상이 되는 자는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이다.

전담요원에게 부여되는 임무는 소관 과학기술정책에 관련된 업무총괄 및 대외협의를 담당이다.

제2항은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은 지식정보화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을 각 부처에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진흥법이 이 규정을 도입한 때에는 과학기술에 관한 안목이 부족

하여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요원의 지정을 강제할 필요가 있었으나, 1999년 현재 각 부처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담부서를 여러개씩 가지고 있고, 각자 산업기술, 농림기술, 해양기술, 국방기술, 환경기술, 보건의료기술, 문화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자신의 영역의 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고 있고, 그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학기술부의 종합조정기능에 대한 공격을 가할 만큼 각 부처의 과학기술기능은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을 의무화하는 조항의 필요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전담요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 전담요원에게 어떠한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5 장 과학기술기반의 확립

1. 제4장 이하의 구성요소에 고려될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총칙,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기구로서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이어 과학기술기본법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행정법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는 방법, 과학기술정책의 내용적 구분방법에 따라 구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

행정법의 흐름에 따라 구성할 경우 과학기술지원을 위한 각종 행정수단,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행정수단, 필요한 규제 및 강제수단 등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정책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은 일단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집행수단을 제4장 과학기술기반의 확립,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6장 과학기술개발 지원 및 성과의 확산, 제7장 과학문화의 창달등, 제8장 과학기술자의 우대 등의 다섯 개의 장으로 개별적인 과학기술정책을 구분하였다.

제4장에서는 과학기술기반의 확립이라는 제목하에 과학기술인력의 확보등,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국가표준기술의 확립 등, 과학기술정보의 유통 등의 내용을 도입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이라는 제목하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에의 평가,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등의 내용을 도입하였다.

제6장에서는 과학기술개발 지원 및 성과의 확산이라는 제목하에 연구개발재원의 확보,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의 지원,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도입하였다.

제7장에서는 과학문화의 창달등이라는 제목하에 하나의 조문을, 제8장에서는 과학기술자의 우대라는 제목하에 하나의 조문을 도입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의 실무자들의 협의에 따라 잠정

적으로 도출된 것이다. 특히 기본법에 항구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법에 있었던 한시적인 내용의 구분,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개별법에 분산규정되어야 할 내용 상호간의 합리적인 교통정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개별적인 과학기술정책수단에 대한 조문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제14조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등

가. 과학기술인력의 확보등에 관한 규정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의 인력확보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과학기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선결적 과제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과학기술의 인력확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진흥법과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에 규정된 바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은 과학기술인력개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 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기술훈련의 촉진, 과학기술자의 확보·보호등에 관한 지침을 정한다”.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은 과학기술인력개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강화, 기술훈련의 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자의 연구에 대한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창의적 연구성과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이상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잠정적으로 마련되었다.

제14조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등)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자원의 개발 및 그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강화, 기술훈련의 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자의 연구에 대한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창의적 연구성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인력의 확보등에 관한 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과학기술 인력자원의 개발 및 그 원활한 공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는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 기술훈련의 촉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2항은 정부에게 과학기술인력의 존중 및 그 연구성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과학기술자의 연구에 대한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둘째, 정부는 과학기술자의 창의적 연구성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진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인력의 확보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에 이행하기 위한 특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의무규정에 터잡아 재량껏 과학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과학기술진흥법 및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에 기초한 것이다. 과학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기능대학법, 기능장려법, 기술사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법령과의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의견도 제시된다.

첫째, 인력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원리에 따른다는 점이 이 조항에서는 간과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고 과학기술자가 최대한 우대되는 사회가 조성될 때, 과학기술인력의 공급도 그 궤도를 같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적절한 과학기술예측을 통하여 과학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일이다. 정책의 내용에는 인력수요의 예측,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행정지도 등이 포함된다.

둘째, 시장의 원리가 작용하지는 아니하지만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비전에 따라 반드시 양성되어야 하는 과학기술인력의 범위가 있을 수 있으며, 국가는

이와 같은 범위의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셋째, 양성된 인력이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의 기초과학분야 연구교수제도 등 직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각각의 직장에서 연구인력이 안정적인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연구인력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연구인력의 연구역량을 평가하며, 평가성적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제정하고, 제정된 기준에 맞추어 직장과 합리적 대우를 보장하는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의견이 구체화되고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법령에 구체화됨으로써 과학기술인력이 풍부히 양성되며, 양성된 인력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지식 기반사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제15조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

가.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규정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기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다만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은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력이 양성되더라도 연구기관,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연구재료 등 과학기술의 기반이 원활히 조성되지 아니한다면 과학기술향상의 장애로 작용한다는 인식에서 이 조항이 도입된 듯하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 기자재 등을 정비하고 이를 첨단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재료 등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잠정적으로 작성되었다.

제15조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 ①정부는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 기자재 등을 정비하고 이를 첨단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재료 등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과학기술인력의 연구능력 배양, 과학기술의 진흥, 국제교류의 증진 등을 통한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재단을 설립하고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과학기술재단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나.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연구개발의 기반 조성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연구개발의 기반으로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 기자재 등이다.

정부가 해야할 의무는 이들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를 첨단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제2항은 정부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재료 등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확립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 목적은 연구개발의 효율적 지원이다.

제3항은 과학기술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재단을 설립하고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재단의 설립목적은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 및 선진화이다. 과학기술재단의 기능은 과학기술인력의 연구능력 배양, 과학기술의 진흥, 국제교류의 증진 등이다.

과학기술기반고도화 규정은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의 규정과 과학기술진흥법에 규정되었던 과학기술재단의 설립근거를 물리적으로 병합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규정은 과학기술의 기반을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로 한정하고 이들을 정비하고 첨단화하는 노력을 국가가 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과학기술의 기반이 무엇인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만이 과학기술기반에 해당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과학기술기반이 고도화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 규정이 가지는 다른 문제점은 과학기술재단의 설립근거를 이 규정의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재단의 설립에 관하여는 “한국과학재단법”이 제정되어 있다. 다른 법률로 설립근거가 규정되는 재단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이 필요한가의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연구능력의 배양과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증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다(한국과학재단법 제1조). 따라서 “과학기술기반의 고도화”라는 제목의 조문에 1개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과학기술재단의 업무영역을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가 다각적인 논의에 따라 효율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 제16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규정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능 및 연구개발산물의 시험 및 실용화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 연구기관의 설치 운영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직접적인 산업생산을 위한 단계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에 맡겨둘 수 있겠으나, 기초과학의 연구 및 개발전단계의 기초 및 응용연구분야에 있어서는 기업의 이윤과 직접 연관되지 않아 민간의 자율적 개발에 일임하여서는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초과학의 연구 및 개발전단계의 기초 및 응용연구분야는 개발후단계 엔지니어링 시험평가 및 생산에 이르는 공정의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적극적이고 꾸준한 연구개발이 요청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인 과학기술관계 연구기관의 설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⁶⁾

16) 송중국·오준근·정상조, 과학기술관계법제의 현황과 정비방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한국법제연구원, 1994, 89쪽 참조.

정부차원에서 운영되는 과학기술관계 연구기관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연구기관과 설치 법령 또는 육성법령이 제정되어 정부의 지원 및 감독을 받으나, 독립한 법인의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국·공립연구기관은 정부기관의 직제속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 정부부처의 일부이며, 독립한 법인체가 아니다. 각각의 국·공립연구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각 정부부처의 직제는 구체적 단위부서의 명칭·업무·직종·직급별 정원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공립연구기관의 소속원은 모두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위 및 직급에 따른 공무원의 처우를 받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부처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9.1.29.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연구회”가 설치된다. 연구회 중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연구회로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회의 설치 및 연구회를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특히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반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 특히 1997년말 IMF 관리경제체제의 도입과 연구회체제의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은 예산 및 인원의 삭감, 연봉제의 실시에 따른 소득의 삭감, 계약제의 실시에 따른 종신고용체제의 붕괴를 그 핵심내용으로 함에 따라 그 동요는 더욱 심각하다는 의견이 전해진다. 해외유치과학자, 독자적인 연구사업 및 창업수행능력이 있는 과학자가 속속 연구기관을 이탈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반 자체가 총체적으로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주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 규정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대안이 마련되었다.

- 제16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①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 ②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성에 맞는 임무와 목표를 부여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조성·유지하여야 한다.
- ③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주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④제1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의무를 부여한다. 그 목적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목적이다.

제2항은 정부에게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조성·유지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 의무 이행의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임무와 목표의 부여,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다.

제3항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주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4항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 및 운영을 과학기술기본법이 언급한 것이다. 이 규정으로써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게 할 의무를 과학기술기본법에 선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법률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반조성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를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집중적으로 내지는 거의 독점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뿐만아니라 대학, 민간연구소, 기업체연구소, 개인 등의 폭넓은 참여,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된다.

문제점의 보완이 요구된다.

5. 제17조 국가표준기술의 확립 등

가. 국가표준기술의 확립 규정의 의의 및 내용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은 “국가표준기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표준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가표준의 개발과 그 통일적 준용 및 전문연구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국가표준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마련되었다.

제17조 (국가표준기술의 확립 등)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가표준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표준기술의 개발과 그 통일적 준용 및 전문연구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국가표준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국가표준기술의 확립 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국가표준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보급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 목적은 과학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제2항은 정부에게 국가표준기술을 고도화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 표준기술의 개발 및 그 통일적 준용, 전문연구인력의 양성 등이 요구된다. 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표준기술의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추상적인 정책선언규정으로써 실효성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국가표준기술”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999.2.8.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이 규정하는 국가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등의 모든 표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표준기술은 분명히 국가표준기본법이 정하는 국가표준과 구별되는 개념이라 한다. 그러나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며, 어떻게 이 조문의 효용성을 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 규정은 매우 불명확함을 알 수 있다. 그 보완이 요구된다.

6. 제18조 과학기술의 세계화 촉진

가. 과학기술의 세계화 촉진규정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의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속성상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속성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관하여는 여러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은 제12조에 (과학기술협력)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과학기술부 장관은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 의 법인·단체와의 과학기술협력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기본시책 및 종합적인 계획을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시행을 조정·관리한다.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촉진·지원
2. 과학기술정보 및 과학기술자의 국제교류
3. 과학기술관계 국제회의의 개최·참가
4. 국제과학기술정보수집의 지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 및 계획의 수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第10條에 (科學技術의 世界化 촉진)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政府는 外國政府·國際機構 또는 外國의 研究開發關聯機關과의 科學技術 協力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科學技術人力의 國際交流 등 종합적인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海外現地研究機關의 設立 및 해외엔지니어링技術支援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資金支援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海外科學技術資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海外科學技術者를 적극적으로 유치·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은 제19조에 (국제협력의 촉진)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연구인력 및 과학기술정보의 국가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공동연구협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므로써 새로운 국제질서에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이를 위한 선도적 과학기술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은 第12條에서 (國際技術協力の 촉진)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政府는 大韓民國의 政府·企業·大學·研究所 및 團體등과 國際機構 또는 外國의 政府·企業·大學·研究所 및 團體등과의 技術協力を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技術協力を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1·29 法5725>

1. 國際技術協力を 위한 調査
2. 技術人力 및 情報의 國際交流
3. 國際技術市場의 設置 및 운영
4. 國內·外 技術의 활용 또는 導入의 촉진
5. 國際技術協力を 촉진하기 위한 財團의 設立 및 지원
6. 國內 企業研究所의 海外進出 또는 外國研究所의 國內誘致

7. 기타 國際技術協力を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産業資源部令 이 정하는 사업

③産業資源部長官은 主管機關으로 하여금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상의 조문을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작성되었다.

제18조 (과학기술의 세계화 촉진) 정부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등 연구개발관련기관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 인력, 연구기관의 교류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의 세계화 촉진규정의 분석

이 규정은 정부에게 과학기술의 세계화촉진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 내용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등 연구개발관련기관과의 과학기술협력의 촉진이다.

협력의 내용은 과학기술정보, 인력, 연구기관의 교류 등이다.

이 규정은 조문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등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이 규정이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보완이 요구된다.

7. 제19조 과학기술정보의 유통

가. 과학기술정보의 유통규정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 정보의 진흥은 과학기술예측, 과학기술계획, 과학기술사업의 지원, 과학기술성과의 확산 등의 근거가 되므로 그 규정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과학기술진흥법과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은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은 제10조에서 (과학기술정보의 진흥)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한다.

1. 과학기술정보기관의 육성
2.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제확립
3. 전자계산조직 및 그 이용기술의 도입·개발·활용과 정보처리기술 인력의 양성
4.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보산업의 육성”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은 제10조에서 (정보화의 촉진)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정부는 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관련 정보처리의 고도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연구개발주체 상호간의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 과학기술정보의 생산·수집·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가과학기술의 첨단화·국제화 및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 정보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상의 규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잠정적으로 작성되었다.

제19조 (과학기술정보의 유통) ①정부는 과학기술정보의 생산, 관리·유통 및 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연구개발주체 상호간의 정보교류, 정보망의 구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의 생산, 관리·유통 체계의 확립
2. 과학기술정보기관의 육성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된 내용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설립·지원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각호의 시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과학기술정보의 유통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과학기술정보의 생산, 관리·유통 및 그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시책은 첫째,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둘째, 연구개발주체 상호간의 정보교류, 셋째, 정보망의 구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의 생산, 넷째, 관리·유통 체계의 확립이다.

제 5 장 과학기술기반의 확립

이와 아울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기관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2항은 정부가 위와 같은 의무를 실현하는 전담기관을 설립·지원 할 수 있음을 다시금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각호의 시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든 것이다.

이 규정은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정보기관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정보의 전담기관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규정은 일반적 선언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예와 비교하면 그 구체성의 문제점이 바로 드러난다.¹⁷⁾

다른 법률과의 폭넓은 검토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조문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1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은 第7條에서 (産業情報의 流通 촉진등)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政府는 技術發展의 基盤이 되는 通商·貿易·商業·工業·鑛業 및 에너지産業등에 관한 情報(이하 "産業情報"라 한다)의 이용과 流通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情報의 蒐集·分析·加工 및 流通을 촉진하기 위하여 主管機關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産業情報의 蒐集·分析 및 加工
2. 技術市場의 設置·운영
3. 情報化事業을 추진하는 機關의 지원등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情報의 이용과 流通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産業情報網을 構築할 수 있다.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情報網을 電氣通信事業法에 의한 電氣通信事業者를 지정하여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主管機關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産業情報의 이용과 流通을 촉진하기 위하여 電子文書에 대한 標準의 制定·改正 및 廢止에 관한 사항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韓國産業情報電子文書交換委員會를 둔다.

제 6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1. 제 5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국가는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이 과제를 위탁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재원을 마련하고 마련된 재원을 연구개발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배분한다.

정부 각 부처는 소관법률에서 경쟁적으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부 소관
 - 특정연구개발사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8조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민군겸용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 기초과학연구사업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6조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조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법 제9조
 - 산업자원부 소관
 - 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 산업발전법 제24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 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 건설교통부 소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 보건복지부 소관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 이상에서 제시된 것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을 담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첫째로는 국가가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실시함에 대한 통합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일이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개별적인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게된다. 근거를 두는 방법으로는 개별적인 법률에 각각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두는 방법, 과학기술부의 경우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점연구개발사업 등을 특화하여 가칭 “중점연구개발사업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국가가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두는 일이다.

국가가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모든 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고 정의한 후,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을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근거만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법률로 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칭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셋째로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두는 일이다. 이 경우 국가에게 조사·분석 및 평가의 의무를 부여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에 관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이 과학기술기본법에 마련될 것이 요구된다.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은 제5장에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지원),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의 평가), 제22조(기초과학연구의 진흥), 제23조(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등 네 개의 조문을 두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개별적인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지원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의 의의

이 규정은 국가가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실시함에 대한 통합적인 근거규

정을 두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규정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근거로 하였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第8條에서 (重點國家研究開發事業의 선정 및 지원)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政府는 科學技術革新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國家研究開發事業 (이하 “重點國家研究開發 事業”이라 한다)을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선정하여 이의 추진을 담당할 研究共同體(이하 “重點國家研究開發事業團”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重點國家 研究開發事業團이 重點國家 研究開發事業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에 대하여 出捐할 수 있다.

③政府는 重點國家研究開發事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重點國家研究開發事業의 企劃·評價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專門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④政府는 重點國家研究開發事業의 成果(이하 “開發成果”라 한다)를 産業化하는 企業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技術開發 및 産業育成을 위하여 조성된 長期低利資金의 우선적 融資
2. 重點國家研究開發事業에 의하여 발생된 産業財産權 및 知的財産權의 無償讓與 또는 實施許諾의 알선
3. 重點國家研究開發事業에 참여한 研究人力의 企業派遣勤務
4. 開發成果의 産業化에 참여한 企業研究人力의 海外研修
5. 기타 開發成果의 産業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⑤科學技術部長官은 重點國家研究開發 事業에 참여하는 研究機關과 開發成果를 産業化하는 企業의 附設研究機關에 대하여 兵役關係法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專門研究要員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重點國家研究開發 事業의 추진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の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규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작성되었다.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지원) ①정부는 과학기술혁신 및 국가전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이의 추진을 담당할 연구회 등 연구공동체(이하 "연구회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다.

③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④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국가목표 및 정부 각 부처목표에 부합되는 선정 및 평가기준을 심의하여 규정하고 이를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⑥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하는 각 부처가 제4항에 규정된 선정 및 평가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원칙을 심의하여 시달함으로써 각 부처가 이를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의 분석

제1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체는 정부이다.

사업의 선정절차는 정부 각 부처가 선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다.

사업은 원칙적으로 연구회 등 연구공동체(이하 "연구회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제2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출연 근거를 둔 것이다.

비용출연의 주체는 정부이다. 출연규모는 연구개발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제3항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기관의 설치 근거를 둔 것이다.

설치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의 특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각 행정기관이 각각 별도의 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진흥원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거의 모든 부서가 각자의 평가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러한 체제를 인정하고 그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이다.

제4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심의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심의에 있어 먼저 국가목표 및 정부 각 부처목표에 부합되는 선정 및 평가기준을 심의하여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마련된 기준을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함에 유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설정된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함으로써 모든 부서가 평가결과에 승복하도록 하고, 이로써 평가와 관련된 잡음을 없이자는 것이다.

제5항은 연구개발사업관리에관한법률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6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평가기준의 마련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평가기준이 자의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하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각 부처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심의하여 시달하도록 하고, 각 부처는 이를 준용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 규정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설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도 두고, 평가기관의 근거도 설치하면서 평가기준 등에 관한 원칙도 설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규정을 하다보니 내용이 엉켜있고 불명확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특히 평가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분명한 법률적인 근거가 요구되는 바, 이 규정이 이를 전반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라는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5개 이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체제를 갖추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는 정부 각 부처가 각자의 평가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 평가원이 사실상 정부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관리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별도의기관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평가기준의 경우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침을 시달하고 각 부처가 이 지침에 기초하여 평가기준을 만들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전달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전달받은 내용에 기초하여 통합적인 평가기준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 조문이 표현한 듯 하나, 그 생각도 분명히 전달되지 아니하고, 절차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연구개발사업의 근거와 연구개발사업관리의 근거, 평가기관의 근거 등을 각각 분리하여 분명한 원칙에 따라 재구성할 것이 요구된다.

3.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의 평가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의 평가규정의 의의

이 규정은 제10조 제1안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근간사위원이 관장하는 사무처를 둘 경우, 이 사무처를 중심으로 평가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서서 이 조문이 구성된 것이다. 조문이 이와 같이 구성될 경우 기존의 과학기술평가원은 과학기술부만의 평가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산업기술부가 산업기술평가원을 운영하고 있는 등 정부 각 부처가 각각의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평가원을 두고 있으므로 과학기술평가원이 각 부처의 연구사업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도 이 조문에는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대안으로 작성되었다.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의 평가)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위원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위원은 제1항의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연구개발수행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규정한 내용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중립적인 기구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의 평가규정의 분석

제1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기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위원회에 부여한 규정이다. 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은 각 부처가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항은 평가를 위한 자료요청권과 자료제공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제3항은 평가사업을 담당할 기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평가담당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는 것과, 이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중립적인 기구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과 앞서 분석한 제20조는 상호 모순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 규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독립한 평가원을 설치하여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그 반면에 제20조는 각 부처가 따로 평가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제21조에 따른 평가원의 평가와 제2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평가기능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가 조문의 내용상 분명하지 아니하다.

독립된 평가원의 설치근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평가원의 조직, 임무, 구성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평가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설립근거를 어느 부분에서든지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어있지 아니하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의 평가체제는 과학기술예측,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선정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그 수행결과의 평가, 연구기술정보의 관리,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 등 과학기술연구개발의 본질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 체제는 기관의 설치, 기관의 기능, 평가절차 등을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정밀한 흐름도를 만들고 그 흐름도에 따라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법의 내용을 작성함이 요구된다.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구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4. 제22조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가. 기초과학연구진흥규정의 의의 및 내용

기초과학연구라 함은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기초연구활동”이라 정의된다¹⁸⁾. 기초과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은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기초과학연구진흥시책의 강구 등을 규정한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第9條에서 (基礎研究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政府는 創造的 科學技術革新의 바탕이 되는 基礎研究의 활성화를 위하여 第3條第2項第3號의 基礎研究振興計劃에 따라 基礎研究投資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大學研究의 활성화를 위하여 高等教育法 第1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研究에만 종사하는 敎員制度의 활성화를 위한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基礎研究에 필요한 大型共同研究施設·裝備의 확보·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專擔管理機構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政府는 第3項의 專擔管理機構에 대하여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은 제16조에 (대학연구활동의 지원)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정부는 국가의 기초과학수준의 향상 및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창의적 대학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연구의 특성 및 연구자의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8)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2조

④정부는 실천적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실험·실습 및 현장중심적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기획단의 실무작업반 논의 과정에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과의 관계설정을 정하는 규정만을 둬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작성되었다.

제22조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 ①정부는 국가의 기초과학수준의 향상 및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기초과학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나. 기초과학연구진흥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 목적은 기초과학수준의 향상 및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다.

제2항은 기초과학연구진흥에 관하여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이 법과의 연관하에 제정·운용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의 논의과정에서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과학기술기본법에 한 장을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이유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서였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은 기초과학의 진흥에 관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한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포함된 개별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이 일단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과학연구진흥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5. 제23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가. 협동연구개발의 촉진규정의 의의 및 내용

협동연구개발이라 함은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기업·연구

제 6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소 또는 그와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것"이라 정의된다.¹⁹⁾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연구개발지원시책 수립의무(제4조), 협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우선지원(제5조), 연구개발요원의 교류(제6조), 연구개발정보의공동이용(제7조),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제8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하여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은 제11조에서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정부는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요한 국가적인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자의 상호교류를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기관간에 상호교류되는 과학기술자는 상호교류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第12條에 (産學研 協同研究 촉진)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政府는 産·學·研이 協力하여 추진하는 研究開發事業 및 人力養成事業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政府는 産·學·研 協同研究의 촉진을 위하여 産業體가 大學 또는 特定研究機關育成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研究機關(이하 “特定研究機關”이라 한다)내에 共同研究를 목적으로 研究施設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필요한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産·學·研 協同研究의 촉진을 위하여 産業體·大學 및 特定研究

19)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機關간의 人力交流의 擴大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政府는 理工系大學 在學生의 産業體 및 政府出捐研究機關에서의 實務教育을 통하여 大學教育의 實效性 및 産·學·研 協同을 촉진하여야 한다.”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은 제18조에서 (협동연구의 촉진)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정부는 산·학·연의 교류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의 교류, 연구개발사업의 공동수행,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민·군의 협동연구를 장려하며, 특히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의 실무작업반은 일단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필요성과 그 유용성을 인정하고, 각 법에 규정한 내용 중 과학기술기본법과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관계를 강조하는 선에서 조문을 구성하기로 논의한 후, 다음과 같은 초안을 작성하였다.

제23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①정부는 산·학·연의 교류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의 교류, 연구개발사업의 공동수행,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민·군의 협동연구를 장려하며, 특히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및 민군겸용기술개발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마련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제2항은 정부에게 민·군의 협동연구 및 민·군 겸용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제3항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및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이 이 법과의 관련하여 제정·운용됨을 확인한 것이다.

협동연구개발사업과 민·군겸용기술사업은 그 법적 성격도, 내용도 상당히 다르다. 민·군겸용기술사업이라 함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등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⁰⁾ 각각 다른 내용을 하나의 제목하에 항을 나누어 규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또 협동연구개발사업추진에 대한 국가의무 부여의 내용도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규정하는 내용과 완전히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안의 내용을 가다듬을 것이 요구된다.

20)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2조 (정의) 참조

제 7 장 과학기술개발지원 및 성과의 확산

1. 제 6 장 “과학기술개발지원 및 성과의 확산”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

제6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지원조치를 열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행정기관이 행하는 과학기술개발지원조치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여 이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어나가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국가가 민간차원의 개발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작용은 경제행정법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조장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지원행정” 내지는 “교부지원행정”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자금지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자금지원행정은 수급자에 대하여는 행위구속에 의하여 그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고 경쟁자의 경우 재원의 왜곡된 배분에 의하여 자유로운 경쟁행위가 침해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받는 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과하는 경우 등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개발지원을 위한 행정작용을 규정한 각종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업체 등에 의한 금전급부·융자·지급보증 등의 금융지원,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의 지원, 국유재산·시설·기기 등의 양여 및 대여, 국가소유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및 실시료 면제, 시설단지의 조성 및 제공, 제품의 우선구매 등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지원책 등 넓은 의미의 자금지원행정수단에 포함되는 각종 수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작용 중 어떠한 사항이 기본적 사항인가를 규명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담을 것이 요구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기획단은 일단 제24조 (연구개발재원의 확보), 제25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제26조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제27조 (성과

의 확산 및 실용화의 지원), 제28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제30조 (세계상의 우대) 등의 규정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각종 지원규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이들 조항이 과학기술개발활동의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조항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이들 조항의 내용이 적절히 구성되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이들 조항이외에 과학기술개발활동의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연관되는 과학기술관련법령의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제24조 연구개발재원의 확보

가. 연구개발재원의 확보규정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재원의 확보 방안은 매년 소요재원을 예산으로 마련하는 방안과 장기적 소요재원을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형태로 마련하는 방안으로 나누어진다.

과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어떠한 형태로든 다소간 정부 각 부처에 마련된다. 종래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매년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하여야 한다는 이념하에 “투자의 확대”라는 형태의 조문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은 제9조에 (과학기술투자의 확대)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효율화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소요 예산 또는 매출예정액에 적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해

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사업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③정부는 기업의 과학기술투자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第5條에 (政府研究開發投資의 擴大등)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政府는 政府研究開發 投資가 획기적으로 擴大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政府研究開發投資의 擴大目標値와 推進計劃을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革新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매년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擴大目標値와 推進計劃을 포함한 政府研究開發投資擴大計劃을 수립하고, 그 計劃 및 推進實績을 매년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政府는 教育·國防·農漁村開發·環境·社會間接資本分野 등에서의 科學技術 關聯豫算의 擴大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豫算廳長은 科學技術關聯豫算에 관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와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法에 의한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政府投資機關의 長은 그가 추진하는 사업중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서 技術開發波及效果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關聯 技術開發計劃 을 수립하고 이를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반면에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은 제13조에 (재원의 확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있어서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의 여러 조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작성되었다.

제24조 (연구개발 재원의 확보) ①정부는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있어서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연구개발재원의 확보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제2항은 투자재원의 집행원칙을 규정하였다. 정부는 투자재원을 집행함에 있어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 투자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은 기금설치의 근거조항을 두었다. 이는 소요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된다.

이 규정은 명확한 내용이 없는 선언적인 문구의 나열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요재원은 예산을 통하여 확보되는 당해연도의 재원과 기금을 통하여 확보되는 장기적 재원으로 나뉘어진다. 예산의 경우 과학기술투자예산을 과학기술기본계획, 연도별집행계획, 부문별계획 등과 연관시켜서 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 다년도 사업의 경우 예산사정상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연구사업의 선정·평가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의 설치에 별도의 조문을 통하여 그 근거가 마련될 것이 요구된다. 제 25조에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제3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제25조 과학기술진흥기금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규정의 의의 및 내용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된다.

기금이 마련되기 위하여는 기금의 재원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각종 법령에는 기금의 재원으로는 정부의 출연금, 정부투자기관의 출연금, 목적세의 징수, 부담금의 징수, 국책연구사업의 성과물 사용으로 인한 기술료, 기업의 기술개발적립금, 복권발행 수익금, 기금운용수익금,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기부금, 채권의 발행 등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어왔으며,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그 획기적인 확충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은 제14조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 기술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2.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④기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第7條에 (科學技術振興基金의 확충)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政府는 第3條 第2項 第1號의 投資財源의 擴大目標 및 推進計劃을 달성

제 7 장 과학기술개발지원 및 성과의 확산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 振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科學技術 振興基金(이하 "科學技術 振興基金"이라 한다)을 확충하는 計劃을 수립 추진하고, 科學技術 部長官은 그 實績을 매년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科學技術部長官은 科學技術振興基金의 확충을 위하여 關係中央 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政府投資機關 및 政府出資機關 등에 대하여 科學技術振興基金에의 出捐을 권고할 수 있다.

이어서 第7條의2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특별재원으로서 (技術開發福券의 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科學技術部長官은 科學技術振興 基金의 財源에 充당하기 위하여 技術開發福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技術開發福券의 當첨금의 消滅時效는 지급일로부터 3月로 하고, 消滅時效가 完成된 當첨금은 科學技術振興基金에 귀속된다.

③技術開發福券의 발행에 관하여는 射倖行爲等規制및處罰 特例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福券의 발행에 관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新技術事業金融業 또는 科學技術開發 關聯 業務를 수행하는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開發福券의 발행에 관한 業務를 委託받은 法人은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科學技術部 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技術開發福券의 발행에 의하여 造成된 資金의 會計 및 運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작성되었다.

제25조 (과학기술진흥기금) ①정부는 과학기술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과학기술복권발행의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과학기술진흥기금 규정의 분석

제1항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기금의 설치주체는 정부가 된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과학기술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제2항은 기금의 재원을 규정한다. 기금의 재원으로는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과학기술복권발행의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이 해당된다.

제3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를 규정한 것이다. 기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항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두는 것에 관하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에 참여한 각 부처의 실무자들의 이견이 있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부의 진흥기금이므로 전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그 것이었다. 연구개발사업법, 기술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별도의 근거를 두고,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정부는 제24조 제3항과 같이 “정부는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한다”는 형식의 규정을 둬야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4. 제26조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가.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규정의 의의 및 내용

연구단지의 조성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 중의 하나

이다. 현재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라 대덕연구단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제 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두어 연구단지의 구성에 관한 지원시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의 상호 유기적 연계 및 집적에 따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소재의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대덕연구단지와는 별도로 새로운 연구단지의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조성되는 연구단지에 대하여 비용을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마련되었다.

제26조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의 상호유기적 연계 및 집적에 따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소재의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7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규정의 분석

제1항은 과학산업단지의 새로운 조성 및 조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둔 것이다.

과학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하는 것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민간이 조성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은 정부의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연구단지라는 용어 대신에 과학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과학산업단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왜 채택하였는지, 그 뜻은 무엇인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특히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²¹⁾와 과학산업단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2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단의 토지·건물·시설의

제2항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며 제1항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안의 개선이 요구된다.

5. 제27조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의 지원

가.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지원 규정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함께 그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의 지원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현재 기술이전및실용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 법률과 과학기술기본법 상호간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마련되었다.

제27조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의 지원) ①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책사업을 통하여 개발되었거나 국가가 소요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하여 획득된 기술 및 성과를 확산 및 실용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규정된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를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책사업을 통하여 개발되었거나 국가가 소요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하여 획득된 기술 및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함에 있어 참여기관 및 참여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산업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 개발성과를 산업화하는 기업의 부설연구기관에 대하여 병역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집합체를 말한다.

1. 공동연구개발
2.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3.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4. 신기술보육 및 창업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6. 시험생산
7. 기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나.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지원 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기술이전 및 성과확산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정부가 확산시켜야 하는 기술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책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과 국가가 소요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하여 획득된 기술이다.

정부는 이 기술개발의 성과를 확산 및 실용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2항은 정부에게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책사업을 통하여 개발되었거나 국가가 소요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하여 획득된 기술 및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정부가 스스로 확보하고, 이 지적재산권의 이전 방식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술개발을 이룩한 인격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제3항은 정부에게 지적재산권을 확보함에 있어 참여기관 및 참여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함에 유의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4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산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설치한 것이다.

제5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 개발성과를 산업화하는 기업의 부설연구기관에 대한 인력지원의 방안을 병역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는 구체적 내용으로 규정한 것이다.

제6항은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법률이 과학기술기본법과의 연결하에 운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가 각각 그 임무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지원업무의 주무부서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의견의 조정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 내용, 지원절차 등이 세심하게 가다듬어질 것이 요구된다.

6. 제28조 연구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가.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지원사업자를 법으로 규정한 것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이다. 민간사업으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할 경우 연구개발 사업은 보다 다각화될 수 있고 또 활발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제15조에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은 항구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초안은 이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제28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정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자문·평가, 연구개발장비대여, 기술정보가공·판매 등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업·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의 관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 강구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연구개발지원사업자라 함은 기술자문·평가, 연구개발장비대여, 기술정보가공·판매 등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2항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설이용허용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시설이용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는 기업·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이다.

이 규정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규정을 과학기술기본법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항구적인 성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가, 또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7. 제29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규정의 의의 및 내용

기술의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주 작은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을 개발해내며 이를 실용화하는 것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탄력성·유연성 및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중소기업의 과학기술연구개발을 획기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특별규정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초안이 마련되었다.

제29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구매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필요기술에 대한 수요조사, 기술의 이전 또는 이양, 상호기술정보교류를 위한 연구회의 구성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에의 위탁연수 알선 등 기술개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00조0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그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국내외 중소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기술지도·자문 등의 지원사업을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시책강구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정부가 강구하여야 할 시책은 인력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구매등이다. 이와 같은 시책을 강구하는 목적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2항은 정부가 강구하여야 할 또 다른 시책으로서 중소기업의 필요기술에 대한 수요조사, 기술의 이전 또는 이양, 상호기술정보교류를 위한 연구회의 구성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에의 위탁연수 알선 등 기술개발 지원시책을 규정하였다.

제3항은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둔 것이다.

보조금의 지급주체는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다.

지급대상은 그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다.

보조금의 지급범위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제4항은 국유지적재산권의 양여 또는 대여근거를 둔 것이다.

그 주체는 정부이고,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다.

제5항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조치의 법적 근거를 둔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국내외 중소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기술지도·자문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 후,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규정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과학기술기본법에 그대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다. 이들 내용에 항구적 성격을 부여함이 과학연 합리적인가, 또 이들 내용이 기본법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인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8. 제30조 세제상의 우대

가. 세제상의 우대 규정의 의의 및 내용

조세상의 지원제도는 국가가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 및 금융지원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소득세 법인세등 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금을 납세자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감경 또는 면제함을 통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현행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59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상의 지원제도는 엄격한 법적 통제를 받는다.

조세상의 지원제도를 규정한 각 법률은 조세상의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세상의 지원제도는 과학기술뿐만아니라, 경제·사회·문화등의 각 영역에서 지원 및 촉진이 필요한 분야마다 다투어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개별법령에서 조세감면제도가 난립되어 그 통일적 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는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해진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조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조세상의 지원제도도 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자에게 법이 정한 일정한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할 것을 조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세상의 지원제도가 특정한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로 활용될 경우 조세상의 지원수급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필연적으로 불이익을 끼치는 제도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상의 지원제도에도 보조금제도의 경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법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즉 조세상의 지원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은 반드시 일반성 보편성을 가져야 하며 과학기술연구개발주체가 조세상의 지원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조세상의 지원의 요건은 명확하고, 공평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연구개발주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조세상의 지원정책이 일관성을 잃게되어 조세상의 지원요건이 수시로, 아무런 경과조치없이 변경된다거나, 예산상의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계획된 조세상의 지원이 중단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연구개발주체의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은 그 기반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조세상의 지원정책은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조세상의 지원요건이 변경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변경전의 요건을 믿고 행한 모든 투자가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은 조세상의 특례에 관하여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내용을 기초로 시안을 작성하였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第16條에 (稅制상의 優待)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세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①政府는 技術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대하여 稅制상의 優待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個人 또는 法人이 科學技術振興을 위하여 大學·研究機關·團體에 支出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에도 조세관계법률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세제우대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설정되었다.

제30조 (세제상의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의 감면등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세제상의 우대 규정의 분석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 목적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이다. 세제상의 우대조치의 대상은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의 감면등이다. 이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세제상의 우대규정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²²⁾의 예를 반영한 것이다.

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第14條 (租稅에 대한 特例)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벤처企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租稅減免規制法·地方稅法 기타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取得稅·財産稅 및 登錄稅 등을 減免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組合이 벤처企業에 投資할 경우에는 租稅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稅 등을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投資金額, 投資期間 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선언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실효성이 있는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조세특례의 규정은 과학기술관련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등 조세 관련 법령에 조화롭게 배치될 것이 요구된다. 조세특례의 근거는 모두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조세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은 과학기술관련 개별법령에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련 법령에서 과학기술관련법령의 근거조문을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조세특례규정의 법현실과 조화되는 입법이 요구된다.

제 8 장 과학문화의 창달 등

1. 제7장 “과학문화의 창달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

제7장은 과학문화의 창달에 관한 규정을 두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과학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어떠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시책의강구를 규정한 경우,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과학문화의 창달등에 관한 하나의 조문과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설립등에 관한 근거를 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을 뿐이다.

과학문화와 관련하여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과학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 과학공원도 조성되어있다. 과학관 및 과학공원의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과학문화의 창달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과학문화의 창달을 위한 폭넓은 입법의견의 수집이 요구된다.

2. 제31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규정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마련되어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은 제13조에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시책강구)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정부는 새롭고 다양한 과학 기술 발전 에 따른 국민 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 수용능력을 신장시 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는 당해 업무를 담당할 법인 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第17條에 (科學技術文化의 暢達등)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政府는 尖端 科學技術의 발전 및 情報化의 진전에 대비하여 國民의 科學技術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學校 教育 및 社會教育에 있어서 科學技術文化를 振興·보급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科學技術의 振興·開發 및 文化의 暢達에 기여할 목적으로 設立된 法人·團體 또는 科學館育成法에 의하여 登錄된 科學館에 대하여 必要한 經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998년 공청회에 회부되었던 국민회의안은 제23조에 (과학문화의 창달 등)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정부는 새롭고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및 수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과학기술연구활동의 장려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있어서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의 진흥과 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과학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진흥 또는 과학문화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상의 규정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마련되었다.

제31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①정부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및 정보화의 진전에 대비하여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있어서 과학기술문화를 진흥·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개발 및 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및 민간 과학박물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정부가 강구하여야 할 시책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및 정보화의 진전에 대비하여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있어서 과학기술문화를 진흥·보급하는 것이다.

제2항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둔 것이다. 지원주체는 정부이다. 그 대상은 과학기술의 진흥·개발 및 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및 민간 과학박물관 등이다.

이 규정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규정을 과학기술기본법안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규정에 항구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또 기본법에 포함될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는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한국과학문화재단 및 과학기술문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기구들이 한시적인 기구인지 아니면 2002년 이후에도 그 존속이 필요한 기구인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9 장 과학기술자의 우대 등

1. 제 8 장 “과학기술자의 우대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

제8장은 과학기술자의 우대를 위한 기본적 시책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자의 우대에 관한 과학기술계의 요구는 매우 높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이 과학기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한 경우,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과학기술자의 우대등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설정한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제14조에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등을 규정하면서 정부에게 과학기술자의 연구에 대한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창의적 연구성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과학기술자의 우대는 위와 같은 선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하며, 사회의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특수한 우대조치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과학기술자의 우대등에 관한 장을 설정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 포상에 관한 근거규정 밖에는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제8장에서 독립하여 규정하기 보다는 과학기술문화창달에 관한 제7장에 함께 규정하거나, 과학기술인력의 확보에 관한 내용 속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며 자연스러울 수 있다.

과학기술인력의 우대에 관한 폭넓은 입법의견의 수집이 요구된다.

2. 제32조 과학기술자의 우대

가. 과학기술자의 우대 규정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자의 우대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마련되어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은 제18조에서 (포상)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 기술에 관한 발명·연구·개발·응용 또는 그 진흥 및 기업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第18條에서 (科學技術者의 優待等)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政府는 科學技術 者의 自矜心 고취 및 적극적인 研究開發活動을 촉진하기 위한 優待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國·公立研究機關 및 政府가 出捐하는 研究機關의 研究員, 大學敎授 등이 研究開發한 우수한 성과에 대한 적절한 報償施策을 마련하고, 그 성과의 實用化를 장려하기 위한 支援施策 을 강구하여야한다.”

이상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대안으로 작성되었다.

제32조 (과학기술자의 우대) ①정부는 과학기술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연구 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상 및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교수 등이 연구개발한 우수한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시책을 마련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장려하고, 공정한 댓가가 개발자의 권익에 귀속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과학기술자의 우대 규정의 분석

제1항은 정부에게 과학기술자의 우대조치 강구의 책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 목적은 과학기술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연구 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대조치의 내용으로는 포상만이 열거되어 있다.

제2항은 포상이외의 다른 우대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정부에게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교수 등이 연구개발한 우수한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그 성과의 실용화를 장려하는 것 및 공정한 대가가 개발자의 권익에 귀속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지원시책의 강구이다.

이 규정 중 제2항은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기술이전 및 실용화조치등의 조항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자의 우대라는 장을 별도로 설정한 후 포상 한가지 만을 규정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자의 우대를 위한 장의 설치가 필요한 것인가의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10장 보칙 및 부칙

1. 보칙 및 부칙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

법의 편제에 있어서 보칙이라 함은 장절의 편성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항을 보충적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이라 함은 법의 시행일,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경과조치, 이 법의 제정 또는 개정과 함께 타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할 경우 그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의 부칙에서 특별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히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관계이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2002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법률로서 한시적 효력을 가지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간보고서에 작성되어있는 과학기술기본법의 내용은 2000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여 마련되었다. 따라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개별적인 조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기본법안과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상호간에는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완전히 중복되는 내용, 직접 모순되는 내용을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할 경우에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 칙

가. 부칙의 의의 및 내용

과학기술기본법의 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개별적인 조문의 확정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하나 하나 확정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1999. 8. 17.까지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기획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법률의 폐지) 이 법의 시행과 함께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은 이 법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한국과학재단법’ 및 이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이 법 제1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한국과학기술재단법’ 및 ‘한국과학기술재단’으로 한다.

②제30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및 이에따라 운영되는 ‘대덕연구단지’는 각각 ‘대덕과학산업단지관리법’ 및 ‘대덕과학산업단지’로 한다.

나. 부칙의 분석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일은 법의 제정시점에서 정치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안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제2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의 시행과 함께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은 이 법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인위적으로 폐지하지 아니한다는 가정하에 이 법률안이 작성되었다.

제3조는 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과학기술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한국과학재단법’ 및 이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이 법 제1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한국과학기술재단법’ 및 ‘한국과학기술재단’으로, 제30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및 이에따라 운영되는 ‘대덕연구단지’는 각각 ‘대덕과학산업단지관리법’ 및 ‘대덕과학산업단지’로 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부칙의 내용은 잠정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법안의 내용이 하나 하나 확정되어가면서 경과조치가 필요하거나 타법과의 관계상 특별한 조문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 하나 새로이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제11장 맺음말

이 자료집은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이 개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후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대비하여 공청회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수렴된 각종 입법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진과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의 실무진이 4월에 개최한 워크숍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제1차 초안이 10여차의 기획단 소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서 수차례에 걸쳐 가다듬어져서 현재의 공청회 안이 작성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공청회 안 역시 무수히 많은 입법의견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부의 의견과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정리되지 아니한 부분, 상충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진은 현재 주요외국의 과학기술관련법령을 번역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현황도표도 작성중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의 구체적인 골격은 21세기를 향하여 과학기술부 등 정부 각 부처가 마련하는 장기비전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정되고,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현안분석 보고서는 아직 미완성의 입법의견안에 대한 잠정적인 중간 분석 보고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기획단의 공청회안이 작성되는 과정과 그 안이 가지는 기본적인 내용 및 참고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해설서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 보다 많은 입법의견이 새로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현행법제분석 및 외국법제분석과 장기비전 등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완성도가 높은 과학기술기본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안분석 99-01

과학기술기본법(안) 입법의견분석

1999년 12월 24일 印刷

1999년 12월 31일 發行

發行人 徐承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전화 : (579)0090, 0308

등록번호 : 1981.8.11. 제1-a0190호

값 7,000 원

- 本院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ISBN 89-8323-111-4 93360

